
2026년 군산시 사회서비스 사업별 안내



부서별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실 과		사 업 명
경제산업국	신재생에너지과	○ 에너지 바우처 사업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체육진흥과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3개) (장애아동발달재활,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사업 ○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 ○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17개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긴급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첫만남이용권 사업
보건소	건강관리과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전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2026년 연령기준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나이(생일년도) / ■ 가사간병, 일상돌봄, 발달장애인사업: 만나이(생일월)

연 령	출생연도	연 령	출생연도	연 령	출생연도
만 0세	2026년생	만 35세	1991년생	만 70세	1956년생
만 1세	2025년생	만 36세	1990년생	만 71세	1955년생
만 2세	2024년생	만 37세	1989년생	만 72세	1954년생
만 3세	2023년생	만 38세	1988년생	만 73세	1953년생
만 4세	2022년생	만 39세	1987년생	만 74세	1952년생
만 5세	2021년생	만 40세	1986년생	만 75세	1951년생
만 6세	2020년생	만 41세	1985년생	만 76세	1950년생
만 7세	2019년생	만 42세	1984년생	만 77세	1949년생
만 8세	2018년생	만 43세	1983년생	만 78세	1948년생
만 9세	2017년생	만 44세	1982년생	만 79세	1947년생
만 10세	2016년생	만 45세	1981년생	만 80세	1946년생
만 11세	2015년생	만 46세	1980년생	만 81세	1945년생
만 12세	2014년생	만 47세	1979년생	만 82세	1944년생
만 13세	2013년생	만 48세	1978년생	만 83세	1943년생
만 14세	2012년생	만 49세	1977년생	만 84세	1942년생
만 15세	2011년생	만 50세	1976년생	만 85세	1941년생
만 16세	2010년생	만 51세	1975년생	만 86세	1940년생
만 17세	2009년생	만 52세	1974년생	만 87세	1939년생
만 18세	2008년생	만 53세	1973년생	만 88세	1938년생
만 19세	2007년생	만 54세	1972년생	만 89세	1937년생
만 20세	2006년생	만 55세	1971년생	만 90세	1936년생
만 21세	2005년생	만 56세	1970년생	만 91세	1935년생
만 22세	2004년생	만 57세	1969년생	만 92세	1934년생
만 23세	2003년생	만 58세	1968년생	만 93세	1933년생
만 24세	2002년생	만 59세	1967년생	만 94세	1932년생
만 25세	2001년생	만 60세	1966년생	만 95세	1931년생
만 26세	2000년생	만 61세	1965년생	만 96세	1930년생
만 27세	1999년생	만 62세	1964년생	만 97세	1929년생
만 28세	1998년생	만 63세	1963년생	만 98세	1928년생
만 29세	1997년생	만 64세	1962년생	만 99세	1927년생
만 30세	1996년생	만 65세	1961년생	만 100세	1926년생
만 31세	1995년생	만 66세	1960년생	만 101세	1925년생
만 32세	1994년생	만 67세	1959년생	만 102세	1924년생
만 33세	1993년생	만 68세	1958년생	만 103세	1923년생
만 34세	1992년생	만 69세	1957년생	만 104세	1922년생

※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됨
(다른 복지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6년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기준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 원수	100%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00%	120%	100%	120%	100%	120%
1인	2,565,000	3,078,000	92,428	110,969	20,073	32,899	-	-
2인	4,200,000	5,040,000	151,148	183,365	83,625	123,644	152,775	185,675
3인	5,360,000	6,431,000	195,073	232,890	137,279	168,649	197,469	236,378
4인	6,495,000	7,794,000	236,378	284,951	172,901	233,292	240,050	290,169
5인	7,557,000	9,069,000	274,221	327,091	220,149	284,606	279,461	337,647
6인	8,556,000	10,268,000	309,777	374,300	264,935	338,641	318,043	390,974
7인	9,516,000	11,419,000	348,913	432,308	308,246	404,529	360,410	457,613
8인	10,475,000	12,570,000	390,974	457,613	357,158	435,046	410,439	490,306
9인	11,434,000	13,721,000	432,308	535,512	404,529	525,833	457,613	584,741
10인	12,393,000	14,872,000	457,613	535,512	435,046	525,833	490,306	584,741

소득기준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 원수	140%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40%	150%	140%	150%	140%	150%
1인	3,590,000	3,847,000	129,141	138,780	60,210	68,641	-	-
2인	5,880,000	6,299,000	213,686	229,357	146,017	164,508	216,347	232,890
3인	7,503,000	8,039,000	274,221	290,169	220,149	240,352	279,461	296,127
4인	9,093,000	9,743,000	327,091	360,410	284,606	322,443	337,647	374,300
5인	10,580,000	11,336,000	390,974	410,439	357,158	378,691	410,439	432,308
6인	11,979,000	12,834,000	432,308	490,306	404,529	473,662	457,613	535,512
7인	13,322,000	14,273,000	490,306	535,512	473,662	525,833	535,512	584,741
8인	14,665,000	15,712,000	535,512	584,741	525,833	579,249	584,741	634,423
9인	16,007,000	17,151,000	584,741	634,423	579,249	628,429	634,423	712,921
10인	17,350,000	18,590,000	634,423	712,921	628,429	697,282	712,921	838,330

소득기준 (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 원수	160%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60%	180%	160%	180%	160%	180%
1인	3,847,000	4,103,000	148,138	166,263	79,647	104,256	-	-
2인	6,299,000	6,719,000	243,833	274,221	181,659	220,149	247,763	279,461
3인	8,039,000	8,575,000	309,777	348,913	264,935	308,246	318,043	360,410
4인	9,743,000	10,392,000	374,300	432,308	338,641	404,529	390,974	457,613
5인	11,336,000	12,091,000	457,613	490,306	435,046	473,662	490,306	535,512
6인	12,834,000	13,690,000	535,512	584,741	525,833	579,249	584,741	634,423
7인	14,273,000	15,225,000	584,741	634,423	579,249	628,429	634,423	712,921
8인	15,712,000	16,759,000	634,423	712,921	628,429	697,282	712,921	838,330
9인	17,151,000	18,294,000	712,921	838,330	697,282	804,150	838,330	1,076,939
10인	18,590,000	19,829,000	712,921	838,330	697,282	804,150	838,330	1,076,939

목 차

1.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9
2.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3
3.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14
4. 언어발달지원사업	16
5.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17
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18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1
8.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22
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23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7
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30
②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도개발)	36
③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38
④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A:수중, B:유산소(마루))	42
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전국사업)	44
⑥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46
⑦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48
⑧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52
⑨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54
⑩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56
⑪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60

목 차

12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62
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64
14	성인심리지원서비스	66
15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6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17	모두의 힐링농장서비스(도개발)	72
11.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77
12.	긴급돌봄지원사업	97
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3
14.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	107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111
16.	에너지 바우처 사업	115
1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119
1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23
1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24
2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27
21.	첫만남이용권사업	131
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35
23.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사업	139
2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43
25.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149
참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153

청년사업단
서비스 제공지역
"군산시 미해당"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 가사 · 간병 방문지원사업(006001)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사업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대상 (선정기준)	㉢ 만 65세 미만의 <u>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u>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단, 위 경우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 기능자나 실제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신청 가능 ㉢ 만12세이하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 ㉢ 제외대상 - 국고 지원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서비스 이용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입원일 및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나형’ 이용자는 1년 도래 시 자격종료, 추가 이용 시 재신청 필수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서비스내용	㉢ 월24시간/월27시간/월40시간 (1회 방문시 최소 2시간 이상 원칙) - 신체수발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정부보조금+ 본인부담금) (단위: 원)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월24시간(A형)</th><th colspan="3">월27시간(B형)</th></tr><tr><th>지원액(계)</th><th>정부지원</th><th>본인부담</th><th>지원액(계)</th><th>정부지원</th><th>본인부담</th></tr><tr><td>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td><td>456,000</td><td>456,000</td><td>면제</td><td>513,000</td><td>497,610</td><td>15,390</td></tr><tr><td>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td><td>456,000</td><td>428,640</td><td>27,360</td><td>513,000</td><td>482,220</td><td>30,780</td></tr><tr><td colspan="4">※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C형-월40시간)</td><td>760,000</td><td>760,000</td><td>면제</td></tr></table> ※ 시간당 단가 : 19,000원/인정시간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시 최소 2시간 이상 원칙,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산출	구 분	월24시간(A형)			월27시간(B형)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56,000	456,000	면제	513,000	497,610	15,39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456,000	428,640	27,360	513,000	482,220	30,780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C형-월40시간)				760,000	760,000	면제
구 분	월24시간(A형)			월27시간(B형)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지원액(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456,000	456,000	면제	513,000	497,610	15,390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나형)	456,000	428,640	27,360	513,000	482,220	30,780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퇴원자 (C형-월40시간)				760,000	760,000	면제																													
서비스 제공기관	㉢ (4개소)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나눔노인케어센터, 복받는실버요양센터																																		
신청기간	㉢ 매월 20일까지(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참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70%이하 판정 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70%	(참고) 기준중위소득 100%
1인	1,794,967	2,564,238
2인	2,939,504	4,199,292
3인	3,751,325	5,359,036
4인	4,546,317	6,494,738
5인	5,289,703	7,556,719
6인	5,989,166	8,555,952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2. 발달재활서비스(008001)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4

사업목적	-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 18세 미만 장애아동 (* 18세 생일 달까지/ 지원연장은 재학증명서 첨부)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중복 장애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복이음 연계)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영유아(9세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u>발달재활서비스(서식4-1)의뢰서 및 검사자료</u>로 대체 가능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제외대상 : - 다른 법령(또는 국가예산)에 따라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서비스내용	- 월 26만원 한도 내 서비스 이용가능(1회 50분 기본, 제공기관별 단가현황 참조) -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 ※ 의료행위인 물리, 작업치료 등 제공 불가 - 서비스유형 :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재가방문시 시군 사전승인 필요)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table><tr><th>소득기준</th><th>총 구매력</th></tr><tr><td>기초생활수급자 (다형)</td><td rowspan="5">월 26만원</td></tr><tr><td>차상위 계층 (가형)</td></tr><tr><td>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td></tr><tr><td>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td></tr><tr><td>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td></tr></table>	소득기준	총 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6만원	차상위 계층 (가형)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	=	<table><tr><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부담금</th></tr><tr><td>월 26만원</td><td>면제</td></tr><tr><td>월 24만원</td><td>2만원</td></tr><tr><td>월 22만원</td><td>4만원</td></tr><tr><td>월 20만원</td><td>6만원</td></tr><tr><td>월 18만원</td><td>8만원</td></tr></table>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26만원	면제	월 24만원	2만원	월 22만원	4만원	월 20만원	6만원	월 18만원	8만원
소득기준	총 구매력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6만원																						
차상위 계층 (가형)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 (라형)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마형)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26만원	면제																						
월 24만원	2만원																						
월 22만원	4만원																						
월 20만원	6만원																						
월 18만원	8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23개소) 군산언어심리센터,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군산언어발달연구소, 그린맘심리 발달연구소, 에디슨아동발달센터,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이화아동발달조기교육원,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EYE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아리울 언어심리연구소, 소리엘언어심리센터,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움직임놀이터, 재미아이발달 운동센터, 브레인톡,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군산사랑나무운동발달센터,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공감발달연구소, 노아심리발달센터, 더꿈자람교실, 동그라미발달심리센터																						
신청기간	- 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로 관리하는 등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초과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단위:원)

제 공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 비 스 구 분	언어 재활	미술 재활	음악 재활	행동 재활	놀이재활 심리재활	감각운동 발달재활	기 타 (재가방문)
군산언어 심리센터	공단대로 441, 2층(나운동상우빌딩) ☎ 464-7120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	-	-	-	-	-	인지 52,000 (-)
군산언어 발달연구소	수송로 163, 3층 (수송동,예봉프라자) ☎ 465-5997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	-	-	-	놀이65,000 (-)	감각65,000 (-)	인지 65,000 (-)
그린맘 심리발달 연구소	월명로 215,403호 (수송동,씨티월드) ☎ 466-6454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86,600)	52,000 (86,600)	52,000 (86,600)	-	-	-	
군산예술 심리치료 연구소	수송남로20, 5층 (수송동, 뉴그린빌딩) ☎ 468-8396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65,000)	52,000 (65,000)	52,000 (65,000)	52,000 (65,000)	-	-	
에다손이동 발달센터	신평안길 54-3 101호(지곡동,새나빌) ☎ 464-9910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65,000)	52,000 (65,000)	-	-	-	-	심리운동 52,000 (65,000)
이선자 인지언어 치료연구소	수송동로105/702-101 (수송동,오뚜기타워) ☎ 452-3642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65,000)	-	-	52,000 (65,000)	-	-	인지 52,000 (65,000)
초록숲인지 언어심리 상담센터	대학로 245, 202호 (나운동,라파빌딩) ☎ 465-9999	기관방문 (재가방문)	-	52,000 (65,000)	-	-	-	-	인지 52,000 (65,000)
이화아동 발달조기 교육원	청소년회관로 47-7 (송풍동) ☎ 471-6040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65,000)	52,000 (65,000)	-	-	-	-	
맑은소리 아동발달 센터	수송로 257, 3층 (미장동, 금강빌딩) ☎ 910-7555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90,000)	52,000 (90,000)	52,000 (90,000)	-	-	-	
아이전북 심리상담 발달연구소	추동1길 7,4층 (수송동,성우빌딩) ☎ 466-8322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86,700)	65,000 (86,700)	65,000 (86,700)	65,000 (86,700)	놀이65,000 (86,700)	감각65,000 (86,700)	
아리울언어 심리연구소	공단대로292, 3층 (수송동,백토빌딩) ☎ 465-7808	기관방문 (재가방문)	52,000 (65,000)	52,000 (65,000)	-	-	-	-	
소리엘언어 심리센터	나운로4,306호 (문화동,현대코아3층) ☎ 465-9799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86,650)	-	-	-	-	-	
재미아이 발달운동 센터	신지길29(지곡동) ☎ 910-1304	기관방문 (재가방문)	-	-	-	-	-	감각52,000 (-) 운동52,000 (-)	
움직임 놀이터	나운로4, 303호 (문화동, 현대코아) ☎ 442-0575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86,666)	52,000 (86,666)	-	-	재활52,000 (86,666)	-	심리운동 86,666 (86,666)
피터팬 음악놀이 치료센터	나운안길 19, 202호 (나운동, G 빌딩) ☎ 464-9592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87,000)	65,000 (87,000)	65,000 (87,000)	-	-	-	인지 65,000 (87,000)

제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비스 구분	언어 재활	미술 재활	음악 재활	행동 재활	놀이·재활 심리·재활	감각·운동 발달·재활	기 타 (재가·방문)
브레인톡	하산길19-3(나운동) ☎ 910-9003	기관방문 (재가방문)	-	-	-	-	놀이52,000 (-) 재활52,000 (-)	-	
우리봄심리 상담센터	공단대로 396, 3층 (나운동고려빌딩) ☎ 242-4192	기관방문 (재가방문)	55,000 (-)	55,000 (-)	-	-	놀이55,000 (-)	감각55,000 (-)	
군산사랑 나무운동 발달센터	나운안1길 19, 201호(나운동 G빌딩) ☎ 468-0942	기관방문 (재가방문)	-	-	-	-	-	운동52,000 (65,000)	
아이드림 운동발달 연구소	대학로 342, B1층 (나운동, 26빌딩) ☎ 465-1774	기관방문 (재가방문)	-	-	-	-	-	감각65,000 (65,000)	심리·운동 65,000 (65,000)
사회적협동 조합공감 발달연구소	계산로 91, 3층 ☎910-3330	기관방문 (재가방문)	-	-	-	-	-	감각65,000 (65,000)	
노아심리 발달센터	궁포안 2길 24, 5층 501호(조촌동) ☎442-1013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65,000)	65,000 (65,000)	-	-	놀이65,000 (65,000)	감각65,000 (65,000)	
더(THE) 꿈자람교실	신평안길 37, 1층 ☎010-2825-4554	기관방문 (재가방문)	55,000 (65,000)	-	-	-	놀이55,000 (65,000)	감각55,000 (65,000)	인지 55,000 (65,000)
동그라미 발달심리 센터	진포로 87, 서준빌딩 301호 ☎010-2345-1809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65,000)	65,000 (65,000)	-	-	-	감각65,000 (65,000)	인지 65,000 (65,000)

4. 언어발달지원(008002)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4

사업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사업 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동일 가구 내 두명 이상 바우처 서비스 각각 제공 가능)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 제외대상 : - 다른 법령(또는 예산)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유사서비스																			
서비스내용	㉢ 월24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가능(1회 50분 기본, 제공기관별 단가현황 참조)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변경 유형 : 소득 수준의 변화로 인해 본인부담금 변경(등급 변경/ 수시) ㉢ 변경 절차 - 신청 : 본인 신청 (서식 사용) 및 담당자의 직권에 의해 조사·결정 - 결정·전송 : 등급변경이 결정되면 행복이음에 변경내용 입력·전송 *매월 27일 18:00까지 행복이음을 통해 전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익월 1일부터 변경 내용 적용 - 통지 : 신규 신청과 동일하게 전산처리 완료 후 결과 통지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table><tr><th>소득기준</th><th>총 구매력</th><th></th><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부담금</th></tr><tr><td>기초생활수급자 (다형)</td><td rowspan="4">월 24만원</td><td rowspan="4">=</td><td>월 24만원</td><td>면제</td></tr><tr><td>차상위 계층 (가형)</td><td>월 22만원</td><td>2만원</td></tr><tr><td>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td><td>월 20만원</td><td>4만원</td></tr><tr><td>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td><td>월 18만원</td><td>6만원</td></tr></table>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4만원	=	월 24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2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0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8만원	6만원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4만원	=	월 24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2만원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0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8만원	6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소리엘언어심리센터, 군산심리발달교육원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공동 활용 가능)																			
신청 기간	㉢ 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5.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서비스단가 현황

(단위: 원)

제 공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 비 스 분 구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언어발달 진단
피터팬 음악놀이 치료센터	나운안길 19, 202호 (나운동, G빌딩) ☎ 464-9592	기관방문 (재가방문)	65,000 (87,000)	-	65,000 (87,000)	-	65,000 (87,000)
소리엘 언어심리 센터	나운로 4, 306호 (문화동, 현대코아 3층) ☎ 465-9799	기관방문 (재가방문)	60,000 (-)	-	60,000 (-)	-	100,000 (-)
군산심리 발달교육원	번영로 72, 301호 ☎ 464-9910	기관방문 (재가방문)	60,000 (80,000)	60,000 (80,000)	60,000 (80,000)	-	100,000 (100,000)

6.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008003)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4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사업 대상 (선정기준)	○ 등록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이내) ※ 9세미만 비장애인은 발달장애의심 발달재활의뢰서 및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 ○ 서비스 지급대상자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서비스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부부상담 진행 가능 ○ 1회당 서비스 제공기간은 개별상담(50분/월4회), 집단상담(100분 내외) 원칙 - 부부가 각각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되어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해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 상담을 시행한 경우 집단 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 적용 ○ 매 회기 서비스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인력 및 이용자가 서명 후 보관 ○ 서비스 제공방식 : 서비스 제공기관 방문 또는 재가 상담										
서비스 지원 기간	○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 지원연장은 1회(최대 12개월) 가능 ○ 서비스 지원 연장 절차 : ① 이용 종료 1개월 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상태 측정실시(우울척도(CESD-11, 16점 이상), ② 지원 연장 신청서류 제출 : 이용권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상담효과성 평가결과, 우울척도 검사결과지(종료 1개월 전) ③시군구 승인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table><tr><td>총 구매력</td><td></td><td>바우처 지원액</td><td></td><td>본인부담금</td></tr><tr><td>월 최대 20만원</td><td>=</td><td>월 16만원</td><td>+</td><td>최소 월4천원~ 월4만원</td></tr></table> - 정부지원(바우처지원액)은 월 16만원이며 이용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 부담(제공기관은 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보관)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본인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 중단, 본인부담금 수납후 제공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최소 월4천원~ 월4만원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최소 월4천원~ 월4만원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신청 기간	○ 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 예산범위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BDG001)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4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사업 대상 (선정기준)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장애인 20%이상 선정 ㉿ 제외대상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 및 직업훈련 중인 자 - 주간보호센터, 발달지원센터, 복지관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 서비스 내용 :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 외부활동 30%이상 참여 ㊱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다양한 협력기관을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㊲ 주간활동 이용자의 점심식사는 이용자 자부담(제공기관별 가격공시) ㊳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서비스 비용 지급 ㊴ 서비스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㊵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제공인력기준	㉾ 전담인력 : 65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기준 적격자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평생교육사, 국가기술자격법상 직업상담사 등 ㊱ 주간활동서비스 (예비)제공인력 이론교육(30시간), 현장실습(24시간)이수 必													
서비스 지원기간 및 절차	㉾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3년마다 갱신 ㉿ 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 ① 신청(장애인, 보호자 및 직권신청 가능)② 신청 접수(읍면동) ③ 신청자 송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④ 조사 실시 및 결과 송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시군구, 광역시) ⑥ 선정통보서 발송(시군구→신청인,보호자)													
바우처지원액	㉾ 서비스 제공단가 : 기본단가 17,270원, 그룹별(1~3인) 차등단가 적용													
	<table><tr><td>구분</td><td>1인 그룹</td><td>2인 그룹</td><td>3인 그룹</td></tr><tr><td>적용(단가)요율</td><td rowspan="2">150%</td><td>100%</td><td>80%</td></tr><tr><td>그룹당 총 지급률</td><td>200%</td><td>240%</td></tr></table>			구분	1인 그룹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단가)요율	150%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구분	1인 그룹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단가)요율	150%	10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40%											
㉿ 급여유형 및 활동지원서비스 조정(감액)														
<table><tr><td>구분</td><td>기본형</td><td>확장형</td></tr><tr><td>주간활동제공시간</td><td>월132시간</td><td>월176시간</td></tr><tr><td>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td><td>-</td><td>△22시간</td></tr><tr><td>총 급여량</td><td>월132시간</td><td>월154시간</td></tr></table>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제공시간	월132시간	월176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22시간	총 급여량	월132시간	월154시간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제공시간	월132시간	월176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22시간												
총 급여량	월132시간	월154시간												
제공기관	㉾(4개소) (유)좋은이웃, 사회적협동조합 자운,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신청기간	㉾ 매월 1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 예산범위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8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BDG002)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4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사업대상 (선정기준)	㉢ 6세 이상 ~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인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택 1 가능 (중복이용 불가) ㉣ 제외대상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자,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서비스내용	㉢ 그룹형 :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단,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한하여 최대 2개 그룹을 담당 가능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제공인력기준	㉢ 전담인력 : 65세 이하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기준 적합자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평생교육사, 국가기술자격법상 직업상담사 등 ㉣ 방과후활동서비스 (예비)제공인력 이론교육(18시간)이수 必												
서비스 지원기간 및 절차	㉢ 수급자격 유효기간 : 18세가 도래하는 생일까지 ㉣ 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 ① 신청(장애인/보호자/전담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② 신청접수(읍면동) ③ 대상자 결정 및 통지(시군구) ④ 선정통보서 수령(장애인/보호자) 주민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방법 및 기관정보 안내												
바우처지원액	㉢ 서비스 제공단가: 기본단가 17,270원,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table><tr><th>구분</th><th>2인 그룹</th><th>3인 그룹</th><th>4인 그룹</th></tr><tr><td>적용요율</td><td>100%</td><td>90%</td><td>80%</td></tr><tr><td>그룹당 총 지급률</td><td>200%</td><td>270%</td><td>320%</td></tr></table> ㉣ 제공시간 - 월 66시간(일요일·법정공휴일 제외) - 월~토(0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70%	320%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그룹당 총 지급률	200%	270%	320%										
제공기관	㉢ (4개소) (유)좋은이웃, 움직임놀이터,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소리엘												
신청기간	㉢ 매월 20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매월 27일 18:00까지 전송) ※ 예산범위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4

사업 목적	-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 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및 적응도를 향상시켜 다른 지원체계로 전이
사업 대상 (선정기준)	18세 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제외대상 -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취업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주간보호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 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제외
서비스내용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그룹형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1:1매칭된 제공인력과 함께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그룹활동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등 프로그램을 자율 구성 외부활동 20%이상 참여 - 제공기관은 지역사회 다양한 협력기관을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 이용자의 점심식사는 이용자 자부담(제공기관별 가격공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월 1회 서비스 비용 지급 -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제공인력기준	- 전담인력 :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자격기준 적격자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준)교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등 - 통합돌봄서비스 (예비)제공인력 이론교육(80시간) 이수, 사례보고서 작성 必
서비스 지원기간 및 절차	- 수급자격 유효기간 : 3년 ※ 유효기간 3년마다 갱신, 최대 연장 가능기간 제한 없음 - 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 ① 신청(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시 대리신청 가능) ② 신청접수(읍면동) ③ 신청자 송부(시군구→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④ 조사 실시 및 결과 송부(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⑤ 서비스조정위원회 개최(시도) ⑥ 선정 통보서 발송(시군구→신청인,보호자)
바우처지원액	- 서비스 제공단가 : 기준단가 31,086원 - 제공시간 - 월 176시간(주말·공휴일 제외) - 월~금(09시~18시, 일일 최대 8시간)
제공기관	(1개소) (유)좋은이웃
신청기간	상시신청 ※ 예산범위 초과시 대기자로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A:수중, B:유산소[마루]]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 모두의힐링농장서비스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및 이용기간

※ 신청기간 및 이용기간 : 매년

번호	사업군	사업명	신청기간	이용기간	재판정
1	아동재활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2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
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4	아동역량개발 (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5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6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별도 모집	5개월	1회
7	정신건강관리 (3)	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5회
8		성인심리지원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6개월	없음 (단, '24년 선정 대상자만 1회)
9		모두의 힐링농장 서비스	연중	3개월	-
10	신체건강관리 (6)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상반기(2월)	12개월	1회
11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12		스포츠활동건강관리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14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연중	12개월	5회
15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별도 모집	3개월	1회
16	노인·장애인 사회참여지원 (2)	노인문화여가토달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17		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반기별 (2월, 7월)	12개월	1회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현황

번호	사업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계	17개 사업					
1	【01081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시장형)	임상전문가에 의한 치료설계를 바탕으로 아동심리상담, 부모상담, 아동 문제행동 조기개입서비스	- 만18세 이하 문제행동위험군아동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4등급: 54 5등급: 182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4등급: 126 5등급: 28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부안
2	【02011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중재 서비스	기존중위소득 150% 이하 만6세 이하 발달지연 또는 발달정 계 영유아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 시군 (도개발)
3	【031213】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대상 클래식 및 국악 교육 을 통한 정서순화지원 서비스	기존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8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 동문제아동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	【050713】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건강상태점검,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서비스 -A형 : 수중운동 -B형 : 유산소운동(마루운동)	기존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단일등급 A수중: 117 B유산소: 70	단일등급 A수중: 13 B유산소: 1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5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중증장애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지체뇌병변, 근위축증, 척수장애아동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 시군 (전국사업)
6	【080513】 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 요법, 체형 교정 서비스	- 만60세 이상 지체,뇌병변 장애 또는 근골격, 순환신경계질환자 * 당해연도 세대내 1명 신청 가능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4등급: 90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4등급: 9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7	【09091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자기관리, 일상생활 향상서비스, 약물증상관리,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서비스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 기존중위소득 140% 이하) - 정신장애인 또는 정 신과적 소견자	단일등급 189	단일등급 21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8	【13121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리더십, 라이프코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부모상담 등을 통한 자존감 회복 및 비전형성 서비스	기존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가능) * 단, 임실군·순창군 5세 ~ 만16세 -	1등급: 126 2등급: 112 3등급: 98	1등급: 14 2등급: 28 3등급: 42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번 호	사 업 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대상	정부지원금 (월/천원)	본인부담금 (월/천원)	비고 (대상시군)
9	【160213】 스포츠활동건강관리 서비스	비만 및 허약체질 아동에게 알맞은 운동 계획 수립과 맞춤운동 지도 및 영양관리 서비스	-	1등급: 108 2등급: 96 3등급: 84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36	전주, 군산, 정읍
			만5세~만17세			
10	【190613】 노인문화여가토달서비스	노인의 치매예방, 정서지원, 문화여가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 이상	단일등급 144	단일등급 16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11	【190813】 노인맞춤형주거관리 서비스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복지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1등급 : 164 2등급 : 144 * 월차1등급	16	군산, 진안, 무주
			-			
12	【200313】 청소년재활승마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단, 장애인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만7세~만18세	1등급: 180 2등급: 160	1등급: 20 2등급: 40	군산, 익산, 정읍
			장애청소년, 척추 측만 청소년 및 정서적 문 제행동 청소년			
13	【221513】 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다문화교육 및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형성 및 리더십 증진 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1등급: 162 2등급: 144 3등급: 126	1등급: 18 2등급: 36 3등급: 54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고창, 부안
			만6세~만14세 (단, 연령기준 미해당 자 중 초등 및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해당) * 당해연도 세대내 1 명 신청 가능			
14	【991613】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성인의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 예 방,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서 비스	-	1등급: 180 2등급: 160 3등급: 140 4등급: 120	1등급: 20 2등급: 40 3등급: 60 4등급: 80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임실
			만35세 이상 심리정서지원 및 심리적 문제예방이 필요한 성인			
15	【992213】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단일등급 216	단일등급 24	전 시군 (도 개발)
			만18세~39세 인바디 측정결과 BMI 23 이상, 18.5미만			
16	【99251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욕구에 대응, 돌봄 사각지대 해소	-	1등급: 228 2등급: 216 3등급: 192 4등급: 144 5등급: 72 6등급: 0	1등급: 12 2등급: 24 3등급: 48 4등급: 96 5등급: 168 6등급: 240	전 시군 (도 개발)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17	【992713】 모두의 힐링농장 서비스	농어촌 자연경관 및 농장체험을 통해 성인 (가족)들의 심리·정서지원으로 스트레스 대 처 능력을 향상시켜 일상회복 동력 제고	-	1등급: 190 2등급: 160 3등급: 140 4등급: 0	1등급: 10 2등급: 40 3등급: 60 4등급: 200	전 시군 (도 개발)
			만19세 이상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위한 농장체험을 원하는 자 (가족동반 가능)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순창군, 부안군										
목 적	문제행동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정상적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18세 이하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언어발달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행복이음 확인)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 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 언어 및 인지 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되는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에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th><th>제출서류</th></tr> </thead> <tbody> <tr> <td>- 각 지역 병원</td><td>- 진단서 또는 소견서</td></tr> <tr> <td>-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td><td>-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td></tr> <tr> <td>-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td><td> - 소견서(지침 73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 의미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td></tr> <tr> <td> - 우선순위 대상자 1. 복지부 10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td><td>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3번은 제출서류 없음 2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td></tr> </tbody> </table>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복지부 주요 바우처 : 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②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③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④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⑤발달재활서비스, ⑥언어발달서비스, ⑦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 ⑧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⑨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⑩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 결과지 제출(자아존중감 척도지 제외) * 중간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	- 소견서(지침 73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 의미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대상자 1. 복지부 10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3번은 제출서류 없음 2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욕구판단 기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각 지역 병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추천서(직인)+임상심리평가 결과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 자격은 아래 자격기준 참조	- 소견서(지침 73p)+임상심리평가결과지 ① 소견서 '작성자 자격번호'란 슈퍼바이저로 기재 ※ 제공기관의 슈퍼바이저 지정서 제출(직인) ② 소견서에는 『부모 보고형』 항목만 기재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심리평가도구인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인성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구문 의미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대상자 1. 복지부 10대 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3번은 제출서류 없음 2번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필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 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의 내·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 실행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 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 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 관련 정보제공과 중재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 유형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 가능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 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아래 [별표1] 참고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 집단규모에 따른 회당 서비스 시간

- ① 1:1 50분(기본프로그램 40분 + 부모상담 10분)
- ② 1:2 70분(기본프로그램 50분 + 부모상담 20분)
- ③ 1:3 90분(기본프로그램 60분 + 부모상담 30분)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별표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1]에서 제시하는 심리 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 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 유아는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제외 가능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 사용하여 평가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1]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
 - 제공기관 심리평가 결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언어문제해결력, 구문의미이해력검사(저연령 아동의 언어능력 검사지 가능)
	놀이/미술/음악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 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 활용(단, 만 3세 이하의 유아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 제외 가능)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 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 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 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 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 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시장 B형, C형) 등록지 시군으로부터 가격탄력제 운영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가격탄력제 사업수행기관 관리양식' 시군 제출 → 시군 승인 후 서비스 시행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저 지정 필수,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심리, 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통합예술치료) 등 아동청소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학교 전문상담사(전문상담교사)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자격취득 전 실무경력 인정) ※ 단, 2025년 이전 슈퍼바이저 자격(임상심리사 2급)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슈퍼바이저 역할) ① 제공기관의 이용자 추천서 작성(언어재활사는 발달장애 경계 및 인지문제 대상자만 가능) ② 서비스 제공 시 자격사항에 따라 시장 B형 또는 C형의 서비스 가격 적용 가능 ● 제공인력 1. <기본 A형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 아동 상담경력)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1년 변경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가격탄력제 적용 제공인력】 <시장 B형(월21만원)>, <시장 C형(월24만원)> ※ (시장 B형, C형) 지정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중 해당 가격탄력제 제공인력으로 시군으로부터 지정받은 제공인력만 해당 - 타 시군의 가격탄력제 지정 제공기관에서 가격탄력제 제공인력으로 지정받은 제공인력이라도 등록지 기준 제공기관별로 별도 가격탄력제 제공인력으로 지정 필수 2. <시장 B형(월21만원)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로서 자격증 취득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 아동 상담경력)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3. <시장 C형(월24만원) 제공인력>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장애 아동 상담경력)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아존중감(Rosenberg) : 효과성 관리 보고,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KCDI, K-CBCL, K-ARS, RCMAS, K-PRC, K-CYP 또는 언어프로그램 대상자는 언어 발달척도(Pres, Selsi, Revt), 조음척도(UTAP)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 제공인력 1명당 2~3명 이내 *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해 소집단 프로그램(1:2~1:3) 허용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가격탄력제 운영 제공기관 관리 사항> ○ (매월 시군 보고) '가격탄력제 사업수행기관 관리양식'서식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 보고 ○ (제공기록지 변경) '가격탄력제 사업수행기관 제공기록지' 서식으로 변경 작성
서비스 제공기관	(22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아리올언어심리연구소, 군산미술심리아트엔하모니, 군산언어발달연구소, 군산언어심리센터, 움직임놀이터,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소리엘언어심리센터, 아티스군산,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브레인톡, 우리봄심리상담센터, 맑은소리 아동발달센터, 문희예술심리상담소,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동조합,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노아심리발달센터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 전 시군(도개발)		
목 적	● 조기선별(screening)과 중재(intervention)를 통해 ‘환경적 문제’(빈곤·다문화·조손·한 부모·대체 가정)에 의해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한 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의 정상화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6세 이하 영유아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중재서비스,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행복이음 확인)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 건강검진 검사결과	
	-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이하 항목 중 택 1〉 ①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보건소장 추천서(직인)	
서비스 대상	-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Denver II, K-CDRII, K-DEP, K-ASQ, KCDI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경우	- 추천서(직인)+발달검사결과지 (검사 자격자가 실시)	
	- 예외적으로 제공기관이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임상실무경력 10년 이상이 된 제공인력이 임상심리검사를 진행한 결과지가 첨부된 경우	- 소견서 + 검사결과지 * 검사자의 경력사항 및 자격번호 기재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일치해야 함(예시-언어발달영역 : 언어재활사)		
	○ 언어재활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 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교육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 또는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20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지연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2가지 영역 이상 서비스 제공 필수)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tr><td rowspan="4">기본 서비스</td><td>발달기초영역</td><td>-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td><td rowspan="4">주 2회 월 8회</td><td rowspan="4">60분</td></tr><tr><td>언어발달영역</td><td>-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td></tr><tr><td>초기 인지영역</td><td>-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td></tr><tr><td>정서·사회성영역</td><td>-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td></tr><tr><td>부가 서비스</td><td>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td><td>-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td><td></td></tr></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잠재적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전반적 발달, 언어, 초기인지, 정서 및 행동 관련 검사 실시 - 2단계 : 서비스 대상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조기중재서비스 실시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 4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 5단계 : 사후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 종결 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월 8회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가 서비스	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월 8회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부가 서비스	1. 발달검사 관련 보고서 작성 (서비스 초반·중반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배부) 2.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연 3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해 화재·상해보험 등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아동의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발달검사(DenverII, K-CDRII, KDEP, K-ASQ, KCDI 등)로 향상도(1개 영역 이상 정상범위 내 향상) 측정검사 실시 ※ 이와 별도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효과성 입증 제출용 K-CDR-R 향상도 제출 (이용자 전체)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이용자 가능 ※ 1:1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시간 조절(회당 40분 서비스) ➡ 부모가 원하거나, 기관장의 소견이 있을 경우 서비스 계획 시 기록(1:1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기록)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또는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창의개발협동조합, 맘투맘심리상담센터,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노아심리발달센터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시군개발)		
목 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 ~ 만18세 아동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사업 (행복이음 확인)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검사시, 담당자가 검사결과지를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 결핍 아동 등)		학교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직인)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이하 항목 중 택 1> ①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직인) ② 공공기관장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직인) * 지역아동센터 제외
	-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 (지역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동 순위인 경우 연령이 낮은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존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20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140,000원	6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재판정 1회)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횟수는 월4회(주1회, 1일 연속 이용) 선택 가능
단, 월4회(주1회, 1일 연속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정상수업(결제)와 동일한 일자에 보강수업(결제) 불가 → 서비스 이용(제공) 계약서에 명시하고 확인, 계약서에 미기재 시 별도 동의서 징구

* ~`24년 선정되어 `25년에 종료되는 이용자는 시군의 승인을 득한 이용자만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본 서비스	1.	A형: 클래식 악기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오케스트라 및 관현악 합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타악기 인정	주 2회 월 8회	60분
		B형: 전통국악 프로그램 이론 및 실기		12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치유 서비스 제공		1:1 40분 1:6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결과보고로 서비스 제공 확인 (사진 등 증빙)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연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회의	연 1건 이상	
부가 서비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개인 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및 국악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음악교육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등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 <클래식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부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국악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② 전통문화예술(악기)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자 ③ 문화예술교육사(전통악기)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 제공방식 : ① 제공기관은 클래식 프로그램 또는 국악 프로그램 선택제공 가능 ② 이용자가 클래식 프로그램 또는 국악 프로그램을 선택 ※ 단, 동일 이용자에게 클래식 프로그램과 국악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강점난점 척도 사전·사후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A형 클래식악기) 3명 이내, (B형 전통국악기)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인력 1명당 6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① 제공기관이 클래식 악기 또는 국악기 선택하여 기관등록 및 서비스 제공 ② 제공기관이 클래식 악기와 국악기를 혼합하여 기관등록 및 서비스 제공 ※ 단, 이용자가 클래식 악기 또는 국악기를 선택하며, 동일 이용자에게 클래식 악기와 국악기 혼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9개소) 센트럴심포니오케스트라,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아트심포니, 문희예술심리상담소, 사운드오브뮤직센터, 동아음악&놀이센터, 늘봄마음채움상담센터, 비올른 심포니, 그린아트독서클럽디오션센터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4 【050713】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목 적	●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만 55세 이상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 (행복이음) (문체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부서 별도 확인)				
	욕구기준		제출서류		
	지속적인 운동으로 건강증진을 희망하는 노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 의료급여관리사의 추천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만성질환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만성질환자 증빙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질병코드 확인 가능 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11개 만성질환자 고시에 해당 하는 질환자 중 정신 및 행동장애 제외 ① 신경계질환 : G00~G37, G43~G83 ② 고혈압성 질환 : I10~I15 ③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 B18, B19, K70~K77 ④ 당뇨병 : E10~E14 ⑤ 호흡기결핵 : A15~A16, A19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 : J44 ⑦ 대뇌혈관질환 : I60~I69 ⑧ 두개 내 손상 : S06 ⑨ 갑상선의 장애 : E00~E07 ⑩ 심장질환 : I05~I09, I20~I27, I30~I52)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수중운동 : 월130,000원, 유산소운동 : 월80,000원) ※ '26년 선정 이용자(재판정 포함)만 서비스 가격 적용('25년 선정되어 '26년 종료 이용자는 '25년 가격 적용)				
	구분	(1등급) 수중운동		(2등급) 유산소운동(마루운동)	
		정부	본인	정부	본인
서비스가격		117,000원(90%)	13,000원(10%)	70,000원(90%)	10,000원(10%)
		130,000원		8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100세건강, 유순정에어로빅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건강상태 점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건강상태 점검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 건강관리 정보제공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종료 시 건강관리 정보 제공	연 3회 종료시	80분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 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2회 월 8회	
※ 1회 80분은 준비 및 정리 운동, 샤워 및 환복 시간 포함, ※ '25년도 선정 이용자 및 '26년도 선정 이용자 서비스 시간 '26년 기준 일괄 적용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 (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 ○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수중운동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수중운동지도 실무경력 2년 이상 ○ 유산소운동은 에어로빅, 요가 등 실내운동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1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신체건강증진척도,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건강상태 점검 회수 준수(연3회) - 전체 이용자 대상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2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5 【070101】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 전 시군(전국 사업)					
목 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지체 및 뇌병변 장애판정자 *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한 자			- 제출서류 없음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재판정 해당년도 초기상담기록지(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장애인 재활공학, 보조공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장애인 재활공학·보조공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분야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120,000만원 (6개월에 1회 바우처생성 및 결제)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84,000원		36,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 단, 신규 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 2명 이상 있는 가구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 → 2등급, 2등급 → 1등급)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9년 선정	2019년 서비스 이용	2020년 재판정1회	2021년 재판정2회	2022년 재판정3회	2023년 재판정4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중증의 지체·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맞는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대상 장애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 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 12개월 정기점검 : 연 2회 수시점검 : 제한없음	제한 없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보호자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제공인력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초기상담기록지로 같음 ● 집단규모 : 해당 없음 ※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불가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관외) 희망숲		
신청기간	● 연중 수시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6 【080513】시각장애인안마바우처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목 적	• 노인성 질환자 및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및 욕구기준 ※ 당해연도 세대내 1명만 신청 가능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이용자는 만55세 이상	〈이하 항목 중 택 1〉 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추천서 ②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③ 국가유공자 확인증 + 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처방전 등 질병코드 확인서류 * 질병분류코드 : G, M, I, R81, E10~15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 10%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으로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만60세 이상 질환자(「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포함) 5.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중 60세 미만인 자 6. 재판정 신청자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180,000원(회당 45,000)		
	※ '26년 선정 이용자(재판정 포함)만 서비스 가격 적용('25년 선정되어 '26년 종료 이용자는 '25년 가격 적용)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162,000원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기준중위소득140% 이하)	144,000원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기준중위소득160% 이하)	126,000원	54,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 본인부담률 50% 90,000원	9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단, 질환 및 수술 전후 등 사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4회, 주 2회 가능 관련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인서 등)는 제공기관이 보관하고, 현장조사 시 확인 - 근골격계 마사지, 지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50분 서비스 시간 내 5분 상담, 35분 수기요법, 10분 비수기요법 운영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노인</td><td>·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td><td rowspan="2">주 1회 월 4회</td><td rowspan="2">50분</td></tr><tr><td>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td><td>·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td></tr></table> ※ '25년도 선정 이용자 및 '26년도 선정 이용자 서비스 시간 '26년 기준 일괄 적용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모니터링(종료 시 효과성 측정 가능한 검사 의무 실시)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5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노인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주 1회 월 4회	5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 전신안마 · 마사지 · 지압 · 발마사지 · 운동요법 · 자극요법 · 체형교정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건강증진도 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2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이용자의 거동 가능 정도에 따라 기관방문과 재가방문 선택하여 제공 가능 (초기상담 시 재가방문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용자의 질병 및 신체상태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함)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또는 혼합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통증잡는백경안마원, 제일경락안마원, 행복안마지압원, 건강희생안마원, 장진지압안마원, 건강안마원										
신청기간	● 연1회(2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 및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정신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기준 없음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심리상담지원사업 (행복이음 확인)

욕구기준	제출서류(이하 항목 중 택 1)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적 소견자 (치매진단자는 제외)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 해당 월 서비스 제외	-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 제출서류 없음 - 정신과적소견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진단 코드 확인서류 가능 ① 정신장애등록코드 : F20,F25,F31,F33 ② 정신과 진단/소견 코드 : F00~F99 ※ 대상자 제외 코드 - F00, F02는 제외 : 장기요양 필요 다중코드에 F00, F02가 있는 경우) - 코드는 3자리 숫자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앞 두 자리 수가 해당되면 선정 - 정신재활 주거시설 이용자
	- 추천서(진단코드가 없는 경우) : ①정신과전문의, ②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 사례관리팀,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GAF, Beck척도 중 택 1하여 검사한 결과지
- 우선순위 대상자 1. 정신장애인(부장애 포함) 2.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 3. 시·군 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에서 연계된 자 4. 정신과적 소견자 : 정신과의사 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1개 발급 제출한 자 (정신과 진단코드 확인 가능한 서류 가능) 5. 정신과전문의 또는 시·군·읍면동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검사한 자 ① GAF척도점수 31점~70점 사이 (31점에 가까울수록 우선순위) ② Beck척도 자살위험군(신청기준 참조) ※동 순위일 경우 만19세~64세 우선 선정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서비스 대상

〈Beck척도에 따른 서비스 신청기준〉

고등학생	대학생	성 인	평가	비고
16~19점	14~17점	9~11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많이 함.	
20~23점	18~21점	12~14점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상당히 많이 함.	우선고려
24점 이상	22점 이상	15점 이상	연령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매우 많이 함.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재판정 대상자	● 재판정 대상자 : 등록된 정신장애인 및 정신과적 진단코드가 있는 경우만 해당 (GAF, Beck척도로는 재판정 신청 불가)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210,000원 ※ '26년 선정 이용자(재판정 포함)만 서비스 가격 적용('25년 선정되어 '26년 종료 이용자는 '25년 가격 적용) <table><tr><td>구분</td><td colspan="2">정부지원금</td><td colspan="2">본인부담금</td></tr><tr><td>단일등급</td><td colspan="2">189,000원</td><td colspan="2">21,000원</td></tr></table>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9,000원		21,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89,000원		21,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5회) * 적용대상 : '18년 이전 재판정 이용자는 재판정 5회 기준에서 재판정 이용 횟수만큼 차감 운영 ** '쓰담쓰담마음건강서비스', '광역정신건강토달케어서비스', '노인마음건강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횟수에 포함하여 재판정 횟수 산정 <table><tr><td rowspan="2">이용자 선정년도</td><td colspan="6">연도별 재판정 횟수</td></tr><tr><td>2019년</td><td>2020년</td><td>2021년</td><td>2022년</td><td>2023년</td><td>2024년</td></tr><tr><td>2019년 선정</td><td>서비스 이용</td><td>재판정1회</td><td>재판정2회</td><td>재판정3회</td><td>재판정4회</td><td>재판정5회</td></tr></table>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9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이용자 선정년도	연도별 재판정 횟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19년 선정	서비스 이용	재판정1회	재판정2회	재판정3회	재판정4회	재판정5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단, 위기상황 개입 등 특수한 경우 월 4회, 주 2회 가능(관련 증빙은 제공기록지에 상세 설명) - 이용자의 특성(증상,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 <table><tr><td>구 분</td><td>서비스 내용</td><td>서비스 횟수</td><td>회당 시간</td></tr><tr><td>기 본 서 비 스</td><td> 1. 대면상담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가족교육 또는 여가활동(접단규모 1:50이하)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td><td>주 1회 월 4회</td><td>50분</td></tr><tr><td rowspan="2">부 가 서 비 스</td><td>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td><td>월 1회</td><td rowspan="2">연 2회 상·하반기</td></tr><tr><td>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개인별 수퍼비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향에 대한 중간/최종 점검 </td><td></td></tr></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대면상담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가족교육 또는 여가활동(접단규모 1:50이하)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주 1회 월 4회	50분	부 가 서 비 스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월 1회	연 2회 상·하반기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개인별 수퍼비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향에 대한 중간/최종 점검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대면상담 - 일상생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 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 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 정신과적 소견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일반 병원진료나 정신과적 진료, 입퇴원 시 병원 동행 서비스 가능 4. 일상생활 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가족교육 또는 여가활동(접단규모 1:50이하)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주 1회 월 4회	50분																								
부 가 서 비 스	- 개인별 사례관리(관리양식에 따른 관리: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 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정기점검	월 1회	연 2회 상·하반기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개인별 수퍼비전 :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방향에 대한 중간/최종 점검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25년도 선정 이용자 및 '26년도 선정 이용자 서비스 시간 '26년 기준 일괄 적용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수립 (시작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서비스 제공(대상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 일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측정 (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단, 제공기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없는 경우 제공인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하여야함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제공인력 대상 월1회 지도(슈퍼비전) 또는 교육 필수 <주의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용자에게 개별 슈퍼비전(부가서비스) 제공 → 이용자 개인별 사례관리 양식에 슈퍼비전 내용 기재(상·하반기)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제공인력,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대상자를 예산액 30% 이내에서 우선대상으로 선정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단순 정신건강의학평가척도(BPRS) 재판정 이용자 사전·사후 검사 대비 유지 • 집단규모 : 기본서비스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단, 기본서비스 중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은 1:5 가능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또는 혼합형(재가방문+집단활동+기관방문) -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적응,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만 기관방문형, 추가확보시설 제공 가능 ※ 제공기관 등록 시 재가방문형 기준으로 등록하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며, 다만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확보시설 보고 (대중이용시설 제외)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9개소) 규탄복지재단,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청춘스케치, 더마음복지센터, 협동조합늘배움터, 청심복지센터, 군산마음심리상담센터, 마음따숨상담센터, 지역을품는사회적협동조합
신청기간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7세~만16세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7세 미만 포함, 임실, 순창은 만5~16세)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김제시의 경우 스마트도시(김제)지역인재육성 (행복이음에서 확인)														
	<table><tr><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tr><td>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td><td>- 제출서류 없음</td></tr><tr><td>-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 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2. 제출서류 없음</td></tr></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 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2. 제출서류 없음						
	욕구기준	제출서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기를 희망하는 자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아동 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서비스 연계 의뢰서 또는 추천서(직인) 2.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재판정 대상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준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심리학·아동·청소년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유아교육학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20년도부터 자격기준에서 삭제. 다만 '19. 12. 31. 이전에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은 '20년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140,000원														
	<table><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26,000원</td><td>14,000원</td></tr><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12,000원</td><td>28,000원</td></tr><tr><td>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td><td>98,000원</td><td>42,000원</td></tr></table>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98,000원	42,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26,000원	14,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12,000원	28,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98,000원	42,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A형 월 8회, 주 2회/ B형 월 4회, 주 1회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를 통하여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 교감적·예방적 서비스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회로 한정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시간</th></tr><tr><td rowspan="3">기 본 서 비 스</td><td rowspan="2">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td><td>A형 : 주 2회 월 8회</td><td>A형 : 90분</td></tr><tr><td>B형 : 주 1회 월 3회</td><td>B형 : 90분</td></tr><tr><td>체험활동</td><td>B형 : 월 1회</td><td>B형 : 480분</td></tr><tr><td>부 가 서 비 스</td><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A형 : 주 2회 월 8회	A형 : 90분	B형 : 주 1회 월 3회	B형 : 90분	체험활동	B형 : 월 1회	B형 : 480분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시간																	
	기 본 서 비 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A형 : 주 2회 월 8회	A형 : 90분																	
			B형 : 주 1회 월 3회	B형 : 90분																	
체험활동		B형 : 월 1회	B형 : 480분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 A형 : 주2회/월8회(회당 90분), B형 : 주1회(월3회)+월1회 체험(회당 90분+48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 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 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진로성숙도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단, 해당 제공기관 이외에 체험활동으로 차량이동시 제공인력 1명당 2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또는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8개소) 이룸, 아티스군산, 지품협동조합,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군산지부, 필레오심리상담센터, 꿈누리, 블로코, 그린아트독서클럽디오션센터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목 적	• 비만 또는 허약체질 아동의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부모교육 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5세~만17세 이하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신청자 ※ 전주시의 경우 장애아동 대상자 제외(장애인운동재활 서비스로 연계)		
	①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아동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100		
	② 건강관리 필요한 허약한 아동 포함 가능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아동·청소년 * 중복이용 제한 : 장애인운동재활서비스(행복이음), (문체부)스포츠바우처,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관련부서 별도 확인)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비만 또는 허약체질로 주기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제출자 * 초등학교 입학 전 대상자인 경우도 해당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 추천서	
	- 경도(비만지수* 20%)이상의 비만 아동 * 비만지수=[(실측체중-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인바디 측정지 내 BMI·체지방량에 과체중 또는 저체중으로 표시된 자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 학생건강체력평가 4등급 이하의 검사결과지 · 학생건강체력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교장 추천서	-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결과지 또는 학교장 추천서(직인)		
- 우선순위 대상자 1. 경도(비만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2.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 3. 공공기관장, 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번 제출서류 없음 3. 추천서(직인)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재판정 대상자	• ('22년 7월 이후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12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08,000원	12,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96,000원	24,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	84,000원	36,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 관련 건강 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1. 운동처방 : 대상 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 도중 변경 가능	주 2회 월 8회	① 일반아동 90분 ② 장애아동 및 특수 지원대상 60분
		2.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3. 기초검사(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 체성분검사, 기초체력측정 검사		
부가 서비스	- 계절 맞춤형 스포츠 활동(방학중) 또는 성과발표 및 대회참가	연 2회 이상	240분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이상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 (이용자에게 제공) - 4단계 : 매월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5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6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 동일해야 함) ○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체험활동 : 여행자보험가입 및 지침에 의거한 점검사항 확인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기초체력증진(PAPS), 자존감 척도(Ros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② (장애아동 및 특수지원 대상 아동) 제공인력 1명당 7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사람과사람들, 드림허브 군산에프에스,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 은퇴자 및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문화여가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 단절에 따른 노인 우울감 및 인지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 60세 이상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농촌형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복지사각지대마을종합복지서비스(행복이음 확인), (문체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주의〉 ‘실버스토리텔러프로그램’, ‘노인정서지원서비스’, ‘해피실버아트케어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통폐합서비스)			
	욕구기준		제출서류	
정서적지지 및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한 노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면단위 거주자 2. 독거노인 3. 부부 단독세대 4.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자 * 주민등록상과 실재가 다른 경우는 이용 불가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2, 3은 제출서류 없음		4. 추천서 또는 연계 의뢰서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재판정 대상자	• 재판정 대상자(’22년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 읍면 거주자(전주시 제외)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1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일등급	144,000원	16,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가 자신의 욕구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기관은 이용자를 서비스별로 그룹핑하여 서비스 제공(단, 집단규모는 준수해야 함)			
	- 초기상담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 결정			
	- 서비스는 선택형 프로그램 + 필수 프로그램으로 월4회 주1회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선택형 프로그램〉 ※ 선택형 프로그램 중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1. 이모작 취업연계 프로그램 : 취업으로 연계 가능한 민간자격 과정 교육	주 1회 월 3회	6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 동화구연지도사, 종이접기지도사, 비누공예지도사, 한지공예지도사, 토탈공예지도사, 바리스타 등 민간자격 취득과정 교육 ※ 수료증 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 2. 이모작 사회공헌 프로그램 : 공연 및 재능기부 활동,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교육 - 댄스 스포츠, 마술,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 - 자서전쓰기, 레크리에이션, 자원봉사자교육 등 ※ 공연활동 또는 자원봉사활동 연1회 실시 3. 치매예방 프로그램 : 소근육, 창작, 손근육, 과거회상 등 - 뇌운동, NIE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공예 및 공작활동을 통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4. 정서지원 프로그램 :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프로그램 - 원예 재활, 미술 재활, 음악 재활,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 재활 관련 프로그램 5. 건강관리 프로그램 - 마루운동, 요가,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등산, 트래킹, 노인 신체건강 관련 운동 종목 및 보건소 방문 등		
	<필수프로그램> 6. 문화여가증진 프로그램(여가활동 및 문화체험 등) - 영화 또는 공연 관람, 박물관 및 전시회 체험, 관광지 및 유적지 문화 체험, 지역축제 참여 활동 - 기관 자체 공연 및 전시회 활동 *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전용면적 기준 준수 ** 장소가 제공기관(추가확보시설)인 프로그램은 연 12회 중 연 6회까지만 가능하고, 연 6회 이상 외부 프로그램 운영	주 1회 월 1회	120분 이상
부 가 서 비 스	개별관리	반기별 1회	

※ '25년도 선정 이용자 및 '26년도 선정 이용자 서비스 시간 '26년 기준 일괄 적용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1. '19. 12. 31. 이전 자격기준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0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2.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일치하여야 함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1. 이모작프로그램

가. <취업연계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개설하는 민간자격 취득과정에 해당되는 강사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민간자격증취득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경력 증빙)
- 민간자격취득 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경우는 교육기관의 민간자격 취득과정 강사활동을 하는 자(교육기관의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빙)

나.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취미 및 자원봉사 교육 해당 민간자격 취득자
- 사회공헌연계프로그램 해당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사회공헌프로그램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2.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교육학 또는 실버복지, 노인복지학과 등 노인학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문화예술교육사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치매예방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치매예방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3.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정서재활프로그램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 원예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푸드테라피, 심리상담 등 정서재활 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자기치유 및 예술재활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노인대상 프로그램 운영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노인스포츠지도사(자격종목과 운동종목 동일)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로 신체건강운동 해당 민간자격 취득 자 ○ 체육 및 운동관련 학과 졸업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자(레크리에이션 학과 제외)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노인운동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신체건강운동 해당 분야 민간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5.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 이모작 프로그램, 치매예방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자 ※ 단, <가족과 의사소통 기법 등 특강>을 문화여가 증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경우 특강주제 관련 강사 이력서 증빙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여가만족도 척도, 삶의 질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10%이상 향상 ● 집단 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5명 이내 이용자 가능 - 문화여가증진프로그램 1 : 다수(차량이동 시 차량 1대당 제공인력 1명) ● 제공방식 : 혼합형(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협동조합늘배움터, 소통하는복지센터, 한국진로코칭센터, (사)한누리,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100세건강, 유순정에어로빅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11 【190813】노인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군산시, 진안군, 무주군	
목 적	• 노인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지원(정리정돈, 청소, 방역, 개인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5세 이상	
	• 욕구기준	
	* ① 시군의 자체 주거개선 및 잔수리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주거관리 서비스 미제공 ②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를 받는 경우 실내환경정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 미제공 → 잔수리 및 방역 서비스 제공	
	욕구기준	제출서류
	주거 및 생활관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자 (통합돌봄 사례관리대상자 우선)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부서의 추천을 받은 자 ※ 1순위 시군 추천대상 : 주거개선사업 탈락자, 노후건물로 화재 예방 및 정기적 방역 필요 가구, 저장강박증이 있는 노인가구, 지자체별 잔수리 사업 수혜자이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한 주거관리 지원 필요 가구 등 2. 면단위 거주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노인가구(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3.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노인 단독세대 (주민등록상과 달리 실제 독거노인 포함) ※단 주민등록지는 서비스 신청지역에 한함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또는 시군 주거복지 관계자 추천서 2, 3,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재판정 대상자	• 재판정 대상자('22년 선정자부터 재판정 대상자임) : 읍면 거주자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1등급(원거리) 월180,000원, 2등급(기본) 월16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1등급(원거리)	164,000원
	2등급(기본)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1등급 원거리 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한 읍면 주민등록상 거주자(시군 소재지 3km이상 등), 군산의 경우 선정 후 제공기관과 해당 제공자의 거리가 3km이상으로 판단될 경우 등급변경 진행 * 군산의 경우 2등급으로 일괄 선정 후 제공기관과의 거리 확인 후 등급변경	
	시군	원거리 지역
	군산시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진안군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장수군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이용자 가구의 욕구에 따라 주거관리, 실내·외 정리정돈(청소),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 요시 타 사업의 주거복지 사업 연계 서비스 제공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tr><td>기 본 서 비 스</td><td>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td><td>주1회, 월4회</td><td>60분</td></tr><tr><td>부 가 서 비 스</td><td>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td><td>필요시</td><td></td></tr><tr><td></td><td>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td><td>분기별 1회</td><td></td></tr></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계약, 초기상담, 사전검사,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 시작 전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해당 가구의 욕구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종료 및 보고서 작성, 사후 검사(이용자 만족도 검사 반기별 의무 실시) (타 예산 주거복지 사업 연계 등 부가서비스 및 사후관리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1회, 월4회	60분	부 가 서 비 스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필요시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분기별 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1. 주거관리 서비스 - 전기, 가스, 수도, 누수, 소모품 등 간단한 수리, 교체 - 창문, 창틀, 문 등 시설점검 및 간단한 수리 2. 실내·외 환경 정리, 정돈(청소) 서비스 - 실내·외 수납 정리 및 청소 3. 실내·외 방역 서비스	주1회, 월4회	60분														
부 가 서 비 스	주거복지 사업 연계(상담)	필요시															
	주거상태 체크리스트 작성	분기별 1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집수리 및 청소(방역) 관련 자활기업 경력자 및 재직자 ②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 및 청소(방역)사업 관련 경력 6개월 이상 자 ③ 건축 및 인테리어(문화재 수리 자격증 포함) 자격증 소지자. 단, 도배, 장판 자격증 제외 ④ 주거개선 관련 업체 또는 지자체의 기술교육 수료자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실내외 환경 정리정돈 및 방역>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②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③ 장애인활동보조인, 가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안전점검(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사고유형별 처리 절차,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안전교육 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연2회) 대상 교육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안전관련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게 대하여 화재·이용자배상(상해)보험 등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 반드시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이용자 만족도(복지부 지침의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 13, 14, 15번 문항) 사전사후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명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마을활력소이음협동조합, 소통하는복지센터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목 적	● 장애아동 및 ADHD, 인터넷과몰입, 척추측만증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에게 승마를 매개로 한 정서행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 예방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장애인은 160% 이하), 만7세~만18세		
	● 욕구기준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지체장애, 뇌변병장애, 발달장애 아동		- 장애아동청소년은 제출서류 없음
	- 척추측만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ADHD 증후군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지침 「참고2」 심층사정평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절단점 이상인 자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2]의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 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 읍면동 주민센터 검사 시에, 읍면동 담당자 검사결과지 확인하고 검사자에 읍면동 담당자 서명하여 신청 가능
	-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 담임교사, 학교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② 추천서(직인) * 단, 담임교사 추천인 경우 서명 가능
	우선순위 대상자 1. 지체 장애인 2. 뇌병변 장애인 3. ADHD 증후군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없음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 중복이용 제한 : (문체부)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부서 별도확인)		
재판정 대상자	● 등록된 장애아동청소년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20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교감활동, 재활승마, 집단 상담을 통한 정서치유서비스 및 신체 교정 서비스 <table><tr><th>구 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tr><td rowspan="3">기 본 서 비 스</td><td>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td><td rowspan="2">주 1회 월 3회</td><td rowspan="2">60분</td></tr><tr><td>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 ○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td></tr><tr><td>집단상담</td><td>월 1회</td><td>60분</td></tr><tr><td>부 가 서 비 스</td><td>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td><td>월 1회</td><td></td></tr></table>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개인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 계획 수립, 제공 - 2단계 : 반기별 모니터링을 통한 욕구 파악 -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부모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	주 1회 월 3회	60분	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 ○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	집단상담	월 1회	60분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 비 스	교감활동(30분) - 말, 동물과의 정서연계 활동	주 1회 월 3회	60분														
	재활승마(30분) - 기승활동을 통한 전문활동 ○ 보조요원 : 이용자 특성상 필요시에 관련학과 전공자 및 재학생을 보조 요원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진행																
	집단상담	월 1회	60분														
부 가 서 비 스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재활승마교관>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② 「말산업육성법」 제12조에 의한 재활승마지도사(농축산부) ③ 승마관련 민간자격증, 승마경기 지도사 소지자 ○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②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예술치료(통합예술치료) 심리상담 등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③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자존감 척도(Rosenberg), 개정판 아동정서불안척도검사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교감활동, 재활승마 -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서비스 시작 2개월 이후 비장애아동청소년 1:3, 장애아동청소년 1:2 ② 집단상담 - 제공인력 1명당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13 【221513】글로벌마인드형성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부안군			
목 적	● 글로벌 시대에 필수인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한 인재육성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확산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만6세~만14세 아동 * 단, 연령기준 미해당자 중 초등 및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 해당			
	● 욕구기준			
	욕구기준	제출서류		
	외국어교육 및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마인드 형성을 희망하는 자 ※ 단, 당해연도 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학교, 읍면동사무소, 시군청 등 공공기관 연계 대상자(지역 아동센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외) 2. 다문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아동 3.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만18세 이하)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추천서(직인)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 추천사유에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명시 2,3. 제출서류 없음		
	● 재판정 대상자 : 1~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자 중 읍면 거주자(전주시 제외) - 신규 이용자와 동일한 욕구기준에 따른 제출서류, 종결보고서, 사전·사후 검사결과지 제출 (자준감 척도지 제외) * 종결보고서에는 사전·사후 변화에 대한 내용 및 담당자 의견에 재판정 필요 여부 판단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18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62,000원	18,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44,000원	36,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126,000원	54,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외국어 교육, 원어민 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증진 서비스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 본 서비스	1. 맞춤형 외국어 교육 서비스 및 글로벌 마인드 교육 (스토리텔링, 단어게임, 부루마블, 프리토킹, 주제별 외국어 학습 등)	주 2회 월 6회	A형:50분 (1:2, 90분) B형:90분
		2. 원어민 문화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음식, 문화, 놀이 등)과 정서 함양 프로그램	월 2회	
	부 가 서비스	-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월 1회	
		- 다문화 체험전시회 또는 성과향상대회	연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외국어 능력 진단도구를 통한 아동의 기초학력 측정 - 2단계 : 해당 가구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마인드 형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3단계 : 사후관리 및 환류(매월 서비스 세부내용 및 전달사항을 보호자에게 제공)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해당 외국어 관련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초등교사의 경우 외국어 교과 전담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외국어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결혼이민자>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여성인력개발원, 평생교육원, 지자체에서 인증한 해당 외국어강사 교육 수료생 ② 결혼이민 전 해당국 또는 한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 ※ '21.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2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 수립(유관기관 비상 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청소년 글로벌 역량증진도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① (기본서비스 A형) 제공인력 1명당 1명 이용자 가능 ※ 원어민문화 및 다양한 문화체험은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기관방문형) ② (기본서비스 B형)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③ (부가서비스) 제공방식 모두 제공인력 1명당 12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① A형 재가방문형 또는 B형 기관방문형 선택제공② 혼합형(A+B) 제공(등록 시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단, 이용자가 A형 재가방문형 또는 B형 기관방문형을 선택하며, 동일 이용자에게 재가방문형과 기관방문형을 혼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	<table><tr><th>유형</th><th>기관명</th><th>언 어</th><th>비고</th></tr><tr><td rowspan="2">재가방문형 (A형)</td><td>군산종합사회복지관</td><td>영어, 중국어</td><td></td></tr><tr><td>글로벌마인드형성센터</td><td>영어, 중국어</td><td></td></tr><tr><td rowspan="3">기관방문형 (B형)</td><td>(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군산지부</td><td>영어</td><td></td></tr><tr><td>꿈누리</td><td>영어</td><td></td></tr><tr><td>블로코</td><td>일본어</td><td></td></tr></table>				유형	기관명	언 어	비고	재가방문형 (A형)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영어, 중국어		글로벌마인드형성센터	영어, 중국어		기관방문형 (B형)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군산지부	영어		꿈누리	영어		블로코	일본어	
유형	기관명	언 어	비고																						
재가방문형 (A형)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영어, 중국어																							
	글로벌마인드형성센터	영어, 중국어																							
기관방문형 (B형)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군산지부	영어																							
	꿈누리	영어																							
	블로코	일본어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목 적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 35세 이상 * 중복이용 제한 : 정신건강도달케어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행복이음, 관련부서 확인) 〈주의〉 ‘부부소통증진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통폐합서비스)																	
	● 욕구기준																	
	<table><tr><th>욕구기준</th><th>제출서류</th></tr><tr><td>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성인</td><td>- 제출서류 없음</td></tr><tr><td>-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 동순위인 경우 만35세~64세 우선 선정</td><td>-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 임상심리평가결과지</td></tr></table>			욕구기준	제출서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성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 동순위인 경우 만35세~64세 우선 선정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 임상심리평가결과지									
	욕구기준	제출서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원하는 성인	- 제출서류 없음																	
- 우선순위 대상자 1. 법원에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중인 부부 2. 시·군 맞춤형복지팀 추천자 3.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가 요구되는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 4.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내 산모 5.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슈퍼바이저 추천자 ※ 동순위인 경우 만35세~64세 우선 선정	- 우선순위에 따른 제출서류 1. 협의이혼 신청 접수증 2. 추천서 또는 서비스 연계 의뢰서 3. 등록장애인 포함 가족은 제출서류 없음, * 정신·신체관련 전문치료 중인 가족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은 해당 가족구성원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 (예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슈퍼바이저 추천서 + 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된 것 인정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200,000원																	
	<table><tr><th>구분</th><th>정부지원금</th><th>본인부담금</th></tr><tr><td>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td><td>180,000원</td><td>20,000원</td></tr><tr><td>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td><td>160,000원</td><td>40,000원</td></tr><tr><td>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50% 이하)</td><td>140,000원</td><td>60,000원</td></tr><tr><td>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td><td>120,000원</td><td>80,000원</td></tr></table>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20,000원	8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180,000원	2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120%초과~15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120,000원	8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없음) ※ 단, ‘24년 선정이용자만 재판정 1회 가능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주 1회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table><tr><th>구분</th><th>서비스 내용</th><th>서비스 횟수</th><th>회당 시간</th></tr><tr><td>기본 서비스</td><td>-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td><td>주 1회 월 4회</td><td>50분</td></tr></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주 1회 월 4회	50분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중간평가보고서 작성	주 1회 월 4회	50분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 2단계 : 주된 호소 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사전검사 -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가. <슈퍼바이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의무 등록요건은 아님) ○ 심리, 상담 관련 석사학위취득 이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5년, 박사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으로 학사는 실무경력 5년, 석사는 성인상담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슈퍼바이저를 갖추지 못한 제공기관은 이용자 추천을 할 수 없음 나.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심리, 상담 등 관련분야 전공자로 학위취득 후 성인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이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1년 이상인 자 ※ '20. 12. 31. 이전 자격기준을 갖춰 채용된 제공인력 '21년 변경된 자격기준 갖춘 것으로 판단 (부부소통증진서비스,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제공인력도 해당)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MMPI-2(MMPI-2RF가능), BDI, STAI, PTSD 척도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자아존중감(Rosenberg)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인 이용자 가능 (필요시 이용자 동의하에 집단 상담으로 일부 운영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단, 등록장애인 또는 정신·신체 관련 전문 치료가 요구되는 가족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에 한해 재가방문형 인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11개소) 본 심리상담센터,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맘투맘심리상담센터,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동조합,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우리봄심리상담센터, 아릅드리심리상담센터, 필레오심리상담센터
신청기간	● 반기별(2월, 7월) 집중모집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17 【992713】 모두의 힐링농장 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2

항 목	내 용				
시행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 전 시군(도개발)				
목 적	● 농어촌 자연경관 및 농장체험을 통해 성인(가족)들의 심리·정서지원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켜일상회복 동력 제고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19세 이상 * 중복이용 제한 : 일상돌봄 전북힐링지원서비스 (행복이음 확인)				
	● 욕구기준				
	욕구기준		제출서류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활용을 위한 농장체험을 원하는 자 (가족동반 가능)		- 제출서류 없음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기간	● 회당 서비스 기준				
	회당 이용시간	회당 가격	월별 횟수	대상자 이외에 추가 이용	
				대상자 외 가족 1인 추가(2인) 이용	대상자 외 가족 2인 이상 추가(3인 이상) 이용
	3시간	50,000원	4회	100,000원 (월 2회)	추가 1인당 대상자 부담 30,000원 *3인 예시) 100,000원+30,000원=130,000원 (월 2회)
	● 서비스 가격 : 월200,000원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 본인부담률 5%		190,000원	10,000원	
	2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아닌 자)		160,000원	40,000원	
	3등급(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60% 이하)		140,000원	60,000원	
	4등급(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 본인부담률 100%		0원	200,000원	
서비스 제공기간	● 3개월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월 4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서비스	- 신체건강 프로그램 : 이야기가 있는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요가, 생활체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 마음건강 프로그램 : 원예활동(텃밭가꾸기, 반려식물 심기, 스트레스 완화 식물 체험, 화환 만들기 등), 차(차 만들기, 다도), 동물(곤충) 매개치유, 공예(도예, 목공, 자연 모빌, 유리공예, 천연염색 등), 명상(죽목, 풍옥 등), 사진활동 -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농산물 등 식재료와 관련된 건강 증진 교육 : 계절 농특산물 효능 마을 계절재료 활용 힐링음식 만들기(건강밥상 또는 다과), 푸드아트 테파리(건강음료, 쿠키, 샐러드, 밑반찬 등 제철음식 으로 간단한 추억음식 만들기), 치유 피크닉 등		월 4회	3시간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사전검사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제공 4단계 : 사후검사, 피드백 제공 및 종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치유농장 또는 사회적 농장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일치해야 함 - 농촌진흥청 발급 치유농업사 1~2급 - 농업인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교육(150시간 이상) 수료자 -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강사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과정(17시간 이상) 수료자 - 농장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농장체험활동 강사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table border="1"> <tr> <td>전문자격(국가자격)</td><td>·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td></tr> <tr> <td>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td><td>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td></tr> </table> * 관련 실무경력 : 치유농업 시설,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학교 등에서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상담·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	전문자격(국가자격)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	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
전문자격(국가자격)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				
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				
안전관리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아동안전 확보계획 수립 - 제공인력(연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차량,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하여 화재·상해보험 등을 가입, 이용시설 보험 가입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후 보완 및 개·보수,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간치밀농장, 주식회사 만나				
신청기간	- 수시모집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27일 18:00까지 전송분 익월 바우처 생성)				

일상돌봄서비스사업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안내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별 기준정보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 영양관리서비스
 - 병원동행서비스
 - 심리지원서비스
 - 중장년건강생활지원서비스[도개발]
 - 전북힐링지원서비스[도개발]
 - 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도개발]

1 일상돌봄서비스 종류 및 내용(군산시 운영중 7개)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신청 대상	단가(월)	제공횟수(월)	최대 이용 가능 기간	중복제한 서비스
1 기본서비스	(월 24, 36, 72시간) 재가돌봄가사서비스	-돌봄필요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유형별 상이	유형별 상이	총 3년	타돌봄서비스
2 영양관리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돌봄필요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26만원	8회 +수시 영양관리	총 3년	타 반찬지원 서비스
3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돌봄필요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27.2만원 (시간당 1.7만원)	최대 16시간	총 3년	
4 심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돌봄필요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24만원	4회	총 3년	·(보건소)정신건강 심리상담바우처사업 ·성인심리지원 ·정신건강토달
5 (도개발) 전복힐링지원	농촌치유자원 활용을 통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돌봄필요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BMI, 허리둘레, 질병 코드) 요건 충족 중장년	20만원	월 4회 (회당 3시간)	없음	·전북청년농촌 치유프로그램 (지투사업)
6 (도개발)중장년 건강생활 지원	중장년의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돌봄필요청·중장년 -(BMI, 허리둘레, 질병 코드) 요건 충족 중장년	20만원	8회 (회당 60분)	총 2년	
7 (도개발)청년 신체건강 증진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돌봄필요청·청년 -가족돌봄청년 -(BMI, 허리둘레, 질병 코드) 요건 충족 청년	24만원	주2~3회 (회당 60~90분)	총 2년	·청년신체건강증진 (지투사업)

2 신청유형

구분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
가사만	B형 (가사형)	월 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 (특화형)	-	2개 이용

*이용가능 서비스 수 보다 더 적게 신청할 수 있음.

3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 제	5%
120% 이하	10%	15%
120%초과~160%이하	25%	30%
160% 초과	100%	100%
본인부담경감필요 가족돌봄청년	본인부담률 5%p 할인('26년 3월 시행)	

구분	요건	요건확인자료(예시)
돌봄필요 청·중장년	13~64세	
① 돌봄 필요성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 등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여부 확인서 등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② 돌봄자 부재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1인 가구
	(2) 동거가족이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경제활동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학업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 등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진단서, 소견서, 입원(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아동(13세 미만), 고령자(70세 이상)	별도 증빙 불요
	위 사례 외의 기타 사유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족돌봄청년	(3) 일상에 지원이 필요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9~39세	
① 돌봄 필요성 (돌봄 대상 가족 기준)	(1) 정신적·신체적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증 등 - 일상돌봄 대상자 선정 조사지(필요시)
	(2)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관련 법상 재난피해자 여부 확인서 등
② 돌봄자 부재	(1)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상 2인 가구
	(2) 가족돌봄청년 외 동거가족이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돌봄필요 청·중장년-②-(2)’와 증빙서류 동일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서류(예시)		
대분류	중분류	세부			
경제 활동	임금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4대보험가입자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 * (육아)휴직자 제외
			4대 보험 미가입자	재직 관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근로)확인서, 위촉(탁) 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소득 관련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중 1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 증빙자료		
농어업인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학업			재학증명서, 학원수강증 등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중증장애인에 한함)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장기 부재	교도소 수감		재소증명원		
	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2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등 시스템 연계로 확인되는 정보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불요

1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가사【500101】기본A형), 【500301】기본C형)
- 가사서비스【500801】기본B형)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3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 전 시군																																																		
사업목적	질병 등으로 독립적 일상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청년의 가구 내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가 돌봄과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부담 및 기본 생활환경 유지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원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3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세~만39세)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필요 가족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중복이용 제한 : 타돌봄서비스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채워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table><tr><td>청소</td><td>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td></tr><tr><td>세탁</td><td>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td></tr><tr><td>식사준비</td><td>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td></tr></table>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2회, 최대 3년까지 가능) * '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26년부터 1년적용 ※ 65세 도래 시 서비스 종료. 단, 2026년 한해만 잔여기간 내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유예기간)																																																		
가격산정	• 서비스 유형별 단가(2026년 1월1일부터 적용) ※ 2025년 이용자도 2026년도 가격 적용 <table><tr><th rowspan="2">서비스 유형</th><th rowspan="2">서비스가 격(월)</th><th colspan="3">소득수준별 금액</th></tr><tr><th>소득수준</th><th>본인부담금</th><th>정부지원금</th></tr><tr><td rowspan="4">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td><td rowspan="4">684,000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면 제</td><td>684,000원</td></tr><tr><td>120% 이하</td><td>(10%) 68,400원</td><td>615,600원</td></tr><tr><td>120~160%</td><td>(25%) 171,000원</td><td>513,0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684,000원</td><td>0원</td></tr><tr><td rowspan="4">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td><td rowspan="4">1,368,000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면 제</td><td>1,368,000원</td></tr><tr><td>120% 이하</td><td>(10%) 136,800원</td><td>1,231,200원</td></tr><tr><td>120~160%</td><td>(25%) 342,000원</td><td>1,026,0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1,368,000원</td><td>0원</td></tr><tr><td rowspan="4">가사만 월 24시간만 (B형)</td><td rowspan="4">444,000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면 제</td><td>444,000원</td></tr><tr><td>120% 이하</td><td>(10%) 44,400원</td><td>399,600원</td></tr><tr><td>120~160%</td><td>(25%) 111,000원</td><td>333,0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444,000원</td><td>0원</td></tr></table> ※ 야간·휴일 및 고난도 사례의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가산 적용 가능하며, 가산률 서비스 가격의 60% ※ A·C형 시간당 19,000원, B형 시간당 18,500원 ※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소)년 본인부담률 5%p 할인('26.3월 부터)	서비스 유형	서비스가 격(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84,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84,000원	120% 이하	(10%) 68,400원	615,600원	120~160%	(25%) 171,000원	513,000원	160% 초과	(100%) 684,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6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68,000원	120% 이하	(10%) 136,800원	1,231,200원	120~160%	(25%) 342,000원	1,026,000원	160% 초과	(100%) 1,368,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만 (B형)	444,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44,000원	120% 이하	(10%) 44,400원	399,600원	120~160%	(25%) 111,000원	333,000원	160% 초과	(100%) 444,000원	0원
서비스 유형	서비스가 격(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돌봄-가사 월 36시간 (A형)	684,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84,000원																																															
		120% 이하	(10%) 68,400원	615,600원																																															
		120~160%	(25%) 171,000원	513,000원																																															
		160% 초과	(100%) 684,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 (C형)	1,368,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68,000원																																															
		120% 이하	(10%) 136,800원	1,231,200원																																															
		120~160%	(25%) 342,000원	1,026,000원																																															
		160% 초과	(100%) 1,368,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만 (B형)	444,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44,000원																																															
		120% 이하	(10%) 44,400원	399,600원																																															
		120~160%	(25%) 111,000원	333,000원																																															
		160% 초과	(100%) 444,000원	0원																																															

제공기관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재가방문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방문서비스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가사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의 장은 ‘가사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할 수 있음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제공인력 등록기준 10명 이상(단, 군지역은 3명 이상) 가) (돌봄 서비스_기본 A형, C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 서비스_기본 B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 상기 ‘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개인욕구 파악 2단계 :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5단계 : 종료상담(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재가방문형 보험가입)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기타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제공기관	(3개소)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나눔노인케어센터

2 【500401】영양관리 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3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 전 시군				
사업목적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구, 이른 돌봄으로 인하여 생계와 가사노동 부담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 식사 지원 및 영양 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3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39세 이하)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 필요 가족				
내용 및 구성	• (영양관리형)				
	구분	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 식약처의 영양지수(NQ), 국민건강영양조사 설문 등 참고		초기 1회	
	식사 지원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월 8회 (주1~2회)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영양관리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 ①유인물 제공, ②주기적 상담(문자, 메일, SNS, 전화, 대면 등), ③필요시 집합교육 등 실시 ※ 대면 방식(대면 상담, 집합교육)은 월 1회 이상, 비대면 방식(문자, 유인물, SNS 등)은 주 1~3회		필요시 수시		
※ 영양관리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온통,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등 참고 - 식사 배달 시 ①이용자의 주거 및 건강상태 등 안부 확인(이용자의 급격한 건강 악화 등이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 119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연락), ②이전 식사 제공분 섭취여부 및 식단 만족도 확인					
제공기간	• 1년 (재판정 2회, 최대 3년까지 가능) * '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26년부터 1년적용				
제공기관	(1개소) 올담식자재협동조합				
가격산정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소)년 본인부담률 5%p 할인('26.3월 부터)				
	유형	서비스가격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영양관리	260,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제공기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지정·등록제) ①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 기관* ②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의 영업자 또는 제 12호의 집단급식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기관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영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 (영양관리형) - (필수인력)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임상영양사 ※ 단, 사업초기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5년까지는 영양사 등 필수인력이 없더라도 서비스 제공 가능('26년에는 반드시 채용) - (그 외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영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한 조리기능사·조리산업기사·조리 기능장 자격취득자 · 배달 한정 운전면허증 소지자 허용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개인욕구 파악 - 2단계 :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 (※ 영양관리형의 경우 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5단계 : 종료상담(※ 영양관리형의 경우 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재가방문형 보험가입)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기타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영양관리형만 해당 - 성인영양지수(NQ) '상'등급(75~100%)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 - (사전검사) 건강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사전검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 수집) - (식단) 식품군(곡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류 등) 및 영양소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식단 구성 - (조리) 가급적 나트륨, 당류, 포화지방을 적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리, 다양한 조리법 사용 - (위생) ① 소비기한(유통기한) 엄격 준수, ② 재료 보관 및 조리, 배달 과정에서 위생 철저히 점검 ③ 품질관리 및 위생사고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보존식 관리* * (보존식 관리 방법) ① 모든 음식을 1인 분량씩(150g권장, 완제품은 그대로 보관) 전용용기나 멸균팩에 독립 보관, ② 보관 시 보존식 기록표 작성하여 부착(채취자 성명, 채취일, 메뉴, 폐기일 등), ③ -18℃ 이하에서 144시간(6일) 이상 보관(식생활안전관리원 보존식 보관방법 참고) - (배송) ① 배송 시 서비스 이용자에게 소비기한, 보관방법 등 안내, ② 신선도 유지를 위한 조치(보냉백, 냉매 사용 등)

③ 【500501】병원 동행 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3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 전 시군																				
사업목적	거동이 불편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수납 등 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3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39세 이하)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필요 가족																				
내용 및 구성	• 월 최대 16시간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door to door) -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등 ※ ① (이동 주의사항) 차량은 별도 제공하지 않고,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 ② (서비스 이용 시간)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기준 07:00~20:00, 주말 09:00~18:00 * 단, 주말 이용 가능 여부는 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③ (제공인력 매칭) 동행 제공인력은 이용자 성별에 따른 동성 매칭을 권장 (의무성X)																				
제공기간	• 1년 (재판정 2회, 최대 3년까지 가능) * '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26년부터 1년적용																				
제공기관	(3개소) 군산한마음서비스센터,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나눔노인케어센터																				
가격산정	• 서비스 가격: 시간당 1.7만원(인력 1인 기준) / 월27.2만원 - 45분 이상 60분 미만 제공 시 1시간으로 산정(1.7만원) - 15분 이상 45분 미만 제공 시 30분으로 산정(8.5백원) ※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소)년 본인부담률 5%p 할인('26.3월 부터) <table><tr><th rowspan="2">서비스가격(월)</th><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tr><tr><th>소득수준</th><th>본인부담금</th><th>정부지원금</th></tr><tr><td rowspan="4">272,000원 (시간당 1.7만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5%) 13,600원</td><td>258,400원</td></tr><tr><td>120% 이하</td><td>(15%) 40,800원</td><td>231,200원</td></tr><tr><td>120~160%</td><td>(30%) 81,600원</td><td>190,4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272,000원</td><td>0원</td></tr></table> ※ 필요시 제공인력 2명 이상 배치 가능 (단, 투입 인력만큼 시간당 단가 추가 적용) → 전복자치도 미해당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제공기관 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활동보조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유사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기관 참여 권장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수발·보호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개인욕구 파악 - 2단계 :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5단계 : 종료상담(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재가방문형 보험가입)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기타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4 【500601】심리 지원 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3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 전 시군			
사업목적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이른 돌봄으로 과도한 부담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및 생활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신청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만13세~만64세), ② 가족돌봄청년(만9~39세 이하)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 (신청자의 돌봄 필요 가족은 미해당)			
내용 및 구성	• 월 4회(주 1회) 개인 상담, 월 1회 집단상담(선택) * 중복이용 제한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행복이음 확인)			
	종류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BDI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회당 50분	월 4회 (주 1회)
		• 사회적 고립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집단상담(선택)	회당 100분	월 1회(선택)
제공기간	• 1년 (재판정 2회, 최대 3년까지 가능) * '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26년부터 1년적용			
제공기관	(2개소) 본 심리상담센터, 군산마음봄심리상담센터			
가격산정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소)년 본인부담률 5%p 할인('26.3월 부터)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초과		(100%) 240,000원	0원	

제공기관 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지원상담서비스’ 요건 충족 필요 •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기준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임상심리사 라)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심리지원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마) 청소년상담사 (가족돌봄청년 대상 서비스만 가능)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개인욕구 파악 - 2단계 : 욕구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서 작성(효과성 척도 사전검사 실시) - 3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4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5단계 : 종료상담(효과성 척도 사후검사 실시)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MMPI-2(MMPI-2RF가능), BDI, STAi, PTSD 척도 중 택1,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5 【510113】중장년건강생활지원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454-3123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 전 시군			
사업목적	• 돌봄필요 중장년 개인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신체능력 향상 도모			
신청자 · 서비스 대상자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 40세~만 64세			
	• 욕구기준			
	1.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중장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 돌봄 필요 증빙 서류	
	- BMI가 23kg/m ² 이상이거나 18.5kg/m ² 미만인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	
내용 및 구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 가능서류)	
	• 우선순위			
	1.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고립운동 포함)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2.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3. 1인 가구				
제공기간	• 서비스 내용 : 월 8회, 주 2회			
	- 건강상태 점검,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건강상태 점검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인바디검사 등)	연 3회	60분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노인 개인별 체력적 특성 및 질환에 따라 부위별(어깨, 허리, 무릎 등) 질환예방 운동 및 근력강화 운동, 낙상예방 운동 등 맞춤형 근골격 운동프로그램 제공	주 2회 월 8회	
부가 서비스	수퍼바이저에 의한 개인별 운동방법 및 효과 점검	연2회 상하반기		
제공기관	• 1년 (재판정 1회, 최대 2년까지 가능) * '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26년부터 1년적용			
제공기관	(2개소) 유순정에어로빅, 협동조합 늘배오토			
가격산정	서비스가격(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수급자, 차상위	(5%) 10,000원	190,000원
		120% 이하	(15%) 30,000원	170,000원
		120~160%	(30%) 60,000원	140,000원
	200,000원	160% 초과	(100%) 200,000원	0원

제공기관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슈퍼바이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가) 건강운동관리사로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나)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로 관련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 체육학 전공 : 다음 3개 과목(기능해부학,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 운동처방) 이수한 자를 관련 전공자로 인정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건강운동관리사 나)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③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대상 운동지도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 ※ 체육학 전공 : 다음 3개 과목(기능해부학, 운동손상평가 및 재활, 운동처방) 이수한 자를 관련 전공자로 인정 다) 스포츠지도사(전문 생활장애인·노인스포츠지도사 포함)로 민간자격증(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취득자 ※ 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 '제공인력 양성과정'(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스포츠의학연구회 협업)을 통해 개발된 민간자격 라) 민간자격증(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취득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노인운동사, 퍼스널트레이너 : '제공인력 양성과정'(전북사회서비스원과 전북스포츠의학연구회 협업)을 통해 개발된 민간자격 ※ '24.6.30.이전 채용된 노인운동관련 제공인력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가 개설한 제공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자격 취득시 변경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기초의학검사 및 건강 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계획 수립 - 4단계 : 개인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공통, 개인별) 실시 - 5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6단계 : 사후관리 (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기관방문형 보험가입)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삶의 질 척도, SFT(Senior Fitness Test)척도 사전·사후 검사 대비 10% 향상 - 건강상태 점검 회수 준수(연3회) - 전체 이용자 대상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 측정하고 전문가 상담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6~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6 【520113】전북힐링지원 서비스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3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 전 시군			
사업목적	● 농촌 치유자원 활용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하여 심리적 건강성 증진, 문제 예방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촉진 ● 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쉼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일상회복, 가족관계 증진			
신청자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9세~만64세 이하(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모두의 힐링농장서비스(자연스러운힐링스테이)(행복이음 확인) －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돌봄필요청·중장년) 만19세~만64세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만9세~만39세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③ 서비스가 필요한 청중장년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BMI가 23kg/m ² 이상이거나 18.5kg/m ² 미만인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 가능서류)	
	● 우선순위 1. (만9세~만39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만19세~만64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고립운동 포함)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2.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3. 한부모가구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족(연령 무관)}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족(연령 무관)}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없음)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월 4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회당 시간
기본 서비스		- 신체건강 프로그램 : 이야기가 있는 힐링 산책, 트레킹, 노르딕 워킹, 요가, 생활체조 등 자연에서 즐기는 운동 프로그램 - 마음건강 프로그램 : 원예활동(텃밭가꾸기, 반려식물 심기, 스트레스 완화 식물 체험, 화환 만들기 등), 차(차 만들기, 다도), 동물(곤충) 매개치유, 공예(도예, 목공, 자연 모빌, 유리공예, 천연염색 등), 명상(죽욕, 풍욕 등), 사진활동1 - 농업농촌 치유자원을 활용한 푸드테라피 - 농산물 등 식재료와 관련된 건강 증진 교육(계절 농특산물 효능), 마을 계절재료 활용 힐링음식 만들기(건강밥상 또는 다과), 푸드아트 테파리(건강음료, 쿠키, 샐러드, 밀반찬 등 제철음식 으로 간단한 추억음식 만들기), 치유 피크닉 등	월 4회	3시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서비스 영역과 제공인력 자격기준이 일치해야 함 가) 농촌진흥청 발급 치유농업사 1~2급 나)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 강사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농업 교육과정(17시간 이상)수료자 다) 농장체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농장체험활동 강사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전문자격(국가자격) <table border="1"> <tr> <td>전문자격(국가자격)</td><td>·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td></tr> <tr> <td>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td><td>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td></tr> </table> 라) 농업인이면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치유농업 운영자교육(150시간 이상) 수료자	전문자격(국가자격)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	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
전문자격(국가자격)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교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청소년상담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도시농업관리사, 동물보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사, 평생교육사, 나무의사				
기술자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조경, 원예, 종자, 유기농업, 축산, 산림, 화훼장식, 임업종묘,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종자축산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사전검사 -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 3단계 : 서비스제공 - 4단계 : 사후검사, 피드백 제공 및 종결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기관방문형 보험가입)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SS척도) 사전·사후 대비 10% 향상 - 집단규모 : 제공인력 1명당 6명~10명 이내 이용자 가능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7 【520213】전북청년신체건강증진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3

구 분	내 용		
시행 시군	• 전 시군		
사업목적	청년의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상생활의 자기돌봄 역량 강화		
신청자	• 소득 및 연령기준 : 소득기준 없음, 만9세~만39세 이하(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 • 욕구기준 * 중복이용 제한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행복이음 확인) - 서비스이용을 원하는 대상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돌봄필요청·중장년) 만19세~만64세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나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② (가족돌봄청년) 만9세~만39세로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③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욕구기준(이하 항목 중 택 1)	제출서류	
	- BMI가 23kg/m ² 이상이거나 18.5kg/m ² 미만인 경우	<이하 항목 중 택 1> ① 비만지수 확인 가능한 검사결과지 ② 인바디 측정지	
	-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	- 허리둘레 확인 가능한 측정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단코드가 확인 가능서류)	
	• 우선순위 1. (만9세~39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만19세~64세의 경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우며(고립운동 포함)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경우 2. 공공 또는 민간 전달체계 추천자 3. 체지방률 여성 28%, 남성 20% 이상		
서비스 대상자	① 돌봄 필요 청·중장년 신청자, ② 가족돌봄청년 신청자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월 12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① 신체건강 프로그램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②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③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월 1회)	① 1:3 월12회 (회당 70분) ② 1:4 월1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서비스 기간 중 1회
제공기간	• 1년 (재판정 1회, 최대 2년까지 가능) * '25년 선정 이용자는 6개월 유지 '26년부터 1년적용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한 등록기관 (지정·등록제) ※ 청년 대상 서비스 지원 경험이 있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년센터, 지역사회복지관 등의 기관 참여 권장 (대표자 및 관리자)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나)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가격산정	-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 경감필요 가족돌봄 청(소)년 본인부담률 5%p 할인('26.3월 부터) <table><tr><th rowspan="2">바우처 총액 (월)</th><th colspan="3">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th></tr><tr><th>소득수준</th><th>본인부담금</th><th>정부지원금</th></tr><tr><td rowspan="5">240,000원</td><td>수급자, 차상위</td><td>(5%) 12,000원</td><td>228,000원</td></tr><tr><td>120% 이하</td><td>(15%) 36,000원</td><td>204,000원</td></tr><tr><td>120~160%</td><td>(30%) 72,000원</td><td>168,000원</td></tr><tr><td>160% 초과</td><td>(100%) 240,000원</td><td>0원</td></tr><tr><td>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td><td>면제</td><td>240,000원</td></tr></table>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면제	240,000원
바우처 총액 (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면제	240,000원																					
제공절차	-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과약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기관방문형 보험가입) 기관 화재보험, 이용자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 차량 사용 시 정기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실시 후 보완 및 개보수 실시 및 이용시설 관리 주체에게 시설 보완 및 개보수 요구																							
기타 유의사항	- 사전·사후 검사 : ①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전 실시, ② 사후검사 : 종료 월 실시 - 대상자별 효과 측정 및 결과 관리·보고 의무 - 인바디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대비 3% 향상 -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 -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긴급돌봄지원사업

12. 긴급돌봄 지원사업

경로장애인과 사회서비스계
☎ 454-3123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신청자	• 만13세 이상 아래 ①, ②, ③ 요건 충족자 ※긴급시, 연령무관 ① 긴급성(한시성)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의 부재 - 타 서비스 신청 처리기간 소요로 인한 한시적 돌봄 필요 - 재난피해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③ 보충성 - 타 돌봄서비스 미이용, 이용 가능한 공적 돌봄서비스 부재 ※ (제외) 대한민국국적이 아닌자, 주거불분명으로 재가서비스 불가능한 경우,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 그 외 자살시도 등 긴급개입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유의사항	•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후 24시간 이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공문 발송																								
내용 및 구성	• 서비스 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table><tr><td>청소</td><td>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td></tr><tr><td>세탁</td><td>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td></tr><tr><td>식사준비</td><td>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td></tr></table> ③ (방문목욕)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청소	청소(가구내 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한정) 및 설거지, 쓰레기 배출과 주거공간 내부정리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와 기본 국반찬하기(장보기 제외)																								
제공기간	• (30일간) 72시간 ※예외적 1회 연장. 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위원회 심의 필요																								
제공기관	• 기관등록 : 지정제(전북특별자치도 지정) • 제공기관 : 3개소 황토나라의료기복지센터, 함께하는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예사랑노인복지센터,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②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로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이상인 자																								
가격산정	• 서비스 가격: (재가돌봄가사) 1시간 기준 19,000원 / (방문목욕) 회당 88,000원 <table><tr><th>구분</th><th>유형</th><th>제공 내용</th><th>바우처총액</th><th>본인부담금</th></tr><tr><td rowspan="2">기본 (돌봄만)</td><td>A형</td><td>(돌봄) 72시간</td><td>1,368,000원</td><td rowspan="4">[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면제) 120% 이하 (10%) 120~140% (20%) 140~160% (100%) 160% 초과</td></tr><tr><td>B형</td><td>(돌봄) 144시간</td><td>2,736,000원</td></tr><tr><td rowspan="2">통합 (돌봄+방문목욕)</td><td>C형</td><td>(돌봄) 72시간 / (목욕) 4회</td><td>1,720,000원</td></tr><tr><td>D형</td><td>(돌봄) 144시간 / (목욕) 8회</td><td>3,440,000원</td></tr></table>					구분	유형	제공 내용	바우처총액	본인부담금	기본 (돌봄만)	A형	(돌봄) 72시간	1,368,000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면제) 120% 이하 (10%) 120~140% (20%) 140~160% (100%) 160% 초과	B형	(돌봄) 144시간	2,736,000원	통합 (돌봄+방문목욕)	C형	(돌봄) 72시간 / (목욕) 4회	1,720,000원	D형	(돌봄) 144시간 / (목욕) 8회	3,440,000원
구분	유형	제공 내용	바우처총액	본인부담금																					
기본 (돌봄만)	A형	(돌봄) 72시간	1,368,000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면제) 120% 이하 (10%) 120~140% (20%) 140~160% (100%) 160% 초과																					
	B형	(돌봄) 144시간	2,736,000원																						
통합 (돌봄+방문목욕)	C형	(돌봄) 72시간 / (목욕) 4회	1,720,000원																						
	D형	(돌봄) 144시간 / (목욕) 8회	3,440,000원																						
제공절차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현장방문 - 2단계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3단계 : 서비스 계약(서비스내용, 일정, 비용 등) - 4단계 : 제공계획에 기반한 서비스 실시 - 5단계 : 서비스 모니터링 - 6단계 : 종료상담 및 서비스 결과보고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 계획수립(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포함) • 제공인력(연 2회)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재가방문형 보험가입) 전문인력배상책임보험, 제공인력 산재보험 또는 상해보험
기타 유의사항	• 기본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까지, 방문목욕 서비스는 하루 1회까지만 이용 가능 - 원거리교통비 신청 : 기본서비스만 가능. • 제공방식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장소, 주요 내용, 제공인력, 이용자 서명, 특이사항 등을 기록

(참고 1)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구분	바우처 총액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본인부담		정부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
		부담 비율	본인부담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금	
A형(기본형) 기본돌봄 서비스만 이용	1,368,000원	0%	면제	100%	1,368,000원	72시간
		10%	136,800원	90%	1,231,200원	72시간
		20%	273,600원	80%	1,094,400원	72시간
		100%	1,368,000원	0%	—	72시간
B형(추가지원형) 예외적으로 기본돌봄 서비스를 추가 지원	2,736,000원	0%	면제	100%	2,736,000원	144시간
		10%	273,600원	90%	2,462,400원	144시간
		20%	547,200원	80%	2,188,800원	144시간
		100%	2,736,000원	0%	—	144시간
C형(통합형) 기본돌봄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	1,720,000원	0%	면제	100%	1,720,000원	72시간
		10%	172,000원	90%	1,548,000원	72시간
		20%	344,000원	80%	1,376,000원	72시간
		100%	1,720,000원	0%	—	72시간
D형(통합추가형) 예외적으로 기본돌봄·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 지원	3,440,000원	0%	면제	100%	3,440,000원	144시간
		10%	344,000원	90%	3,096,000원	144시간
		20%	688,000원	80%	2,752,000원	144시간
		100%	3,440,000원	0%	—	144시간

(참고2) 요건별 증빙서류 안내

	요건	요건확인자료(예시)
① 긴급성	(1)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급성기 질환, 부상 등 발생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진단서 · <서식 5>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필수)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수술확인서, 퇴원확인서 등 · <서식 5>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필수)
	(2)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망	· 사망진단서 · 사망 사실이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입원	· 입원(수술)확인서
	가출·실종 - 가출·실종신고 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신고 접수증 · 실종신고 접수증
	구금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수용증명서
	감염 - 주돌봄자의 코로나19 감염 등 발생 및 돌봄자가 고령인 등의 사유로 감염 위험이 높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진단서 * [참고 5] 1, 2급 감염병 리스트 확인
	기타 위 5가지 사례 외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돌봄 필요성	(3)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 행복이음 등을 통한 타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 <서식 5>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필수)
	기존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서식 5>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필수)
③ 보충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 현장방문(<서식 5> 긴급돌봄 서비스 요구도 평가표)으로 확인	
기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을 것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19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②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19세 미만 등) * 필요서류: <서식 2>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자 추천서 또는 <서식 10> 긴급돌봄위원회 심의서	

(참고3) 긴급돌봄 제공기관

연번	기 관 명	소 재 지	연락처
1	황토나라의료기복지센터	의료원로 64, 2층(지곡동)	063-453-0024
2	함께하는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두란뚝2길 3, 205호(사정동)	063-453-0885
3	예사랑노인복지센터	하신재길 35(문화동)	063-464-9907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 장애인활동지원사업(HWG001)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454-3173

사업 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 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 6세~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선정방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서비스내용	㉢ 지원시간 : 구간에 따라 월 60시간 ~ 480시간 ㉢ 급여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table border="1"><thead><tr><th>활동지원급여의 구간</th><th>종합점수</th><th>월 한도액</th></tr></thead><tbody><tr><td>1구간</td><td>465점 이상</td><td>8,293,000원</td></tr><tr><td>2구간</td><td>435점 이상 ~ 465점 미만</td><td>7,774,000원</td></tr><tr><td>3구간</td><td>405점 이상 ~ 435점 미만</td><td>7,257,000원</td></tr><tr><td>4구간</td><td>375점 이상 ~ 405점 미만</td><td>6,739,000원</td></tr><tr><td>5구간</td><td>345점 이상 ~ 375점 미만</td><td>6,221,000원</td></tr><tr><td>6구간</td><td>315점 이상 ~ 345점 미만</td><td>5,703,000원</td></tr><tr><td>7구간</td><td>285점 이상 ~ 315점 미만</td><td>5,181,000원</td></tr><tr><td>8구간</td><td>255점 이상 ~ 285점 미만</td><td>4,885,000원</td></tr><tr><td>9구간</td><td>225점 이상 ~ 255점 미만</td><td>4,148,000원</td></tr><tr><td>10구간</td><td>195점 이상 ~ 225점 미만</td><td>3,629,000원</td></tr><tr><td>11구간</td><td>165점 이상 ~ 195점 미만</td><td>3,112,000원</td></tr><tr><td>12구간</td><td>135점 이상 ~ 165점 미만</td><td>2,593,000원</td></tr><tr><td>13구간</td><td>105점 이상 ~ 135점 미만</td><td>2,076,000원</td></tr><tr><td>14구간</td><td>75점 이상 ~ 105점 미만</td><td>1,558,000원</td></tr><tr><td>15구간</td><td>42점 이상 ~ 75점 미만</td><td>1,040,000원</td></tr></tbody></table> ㉢ 본인부담금 산정: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정액 부과 - 차상위초과 : 건강보험료에 따라 월 41,600원~216,200원 차등 부과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88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8,293,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774,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7,25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739,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6,221,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5,703,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5,181,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4,885,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4,148,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3,62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3,112,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2,593,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2,076,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1,558,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1,04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활동보조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사)군산시장장애인연합회, (사)한누리, (사)척수장애인협회군산지회, 사회적협동조합감사합니다 ㉢ 방문목욕 : 늘사랑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																																																
신청기간	㉢ 연중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4.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 454-3173

사 업 목 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사 업 대 상 (선정기준)	☞ 돌봄서비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1,20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1,200시간 이내 본인부담 이용료의 40% 부담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소득수준 상관없음)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선정방식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에서 소득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이 불가함에 주의
서 비 스 내 용	☞ 돌봄서비스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 문화·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운영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지원시간 : 아동 1명당 연 1,200시간 범위 내 지원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월 100시간 이내 원칙 ☞ 본인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 1,20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연 1,200시간 이내 본인부담 이용료의 40% 부담
서 비 스 제 공 기 관	☞ (1개소)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 ☎ 063-901-1131
신 청 기 간	☞ 연중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계
☎ 454-3183

사업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업 대상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요건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서비스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사회참여(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특화지원(사례관리 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지원(일상회복패키지) -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 - 사후관리 서비스 : 정기적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등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지원시간 - 중점돌봄군 :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 퇴원후돌봄군 :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 없음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보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동부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함께하는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사업

16. 에너지바우처

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관리계

☎ 454-2712

사업 목적	■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 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6.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6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서비스내용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동 차감																				
바우처지원액	㉠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2025년 기준 <table><tr><td>구 분</td><td>1인 세대</td><td>2인 세대</td><td>3인 세대</td><td>4인이상 세대</td></tr><tr><td>지원금액</td><td>295,200원</td><td>407,500원</td><td>532,700원</td><td>701,300원</td></tr></table>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받는 경우 하절기 금액 지원 가능 <table><tr><td>구 분</td><td>1인 세대</td><td>2인 세대</td><td>3인 세대</td><td>4인이상 세대</td></tr><tr><td>지원금액(하절기)</td><td>40,700원</td><td>58,800원</td><td>75,800원</td><td>102,000원</td></tr></table>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지원금액(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지원금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지원금액(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1600-3190)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6. 6. ~ 2026. 12. / 읍면동에서 신청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하절기 신청 관련 지자체의 편의를 위해 한전과 협조하여 기존 대상자의 전기고객번호를 시스템에 자동 입력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6. 7. ~ 2026. 9. °동절기 : 2026. 10. ~ 2027. 5.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사업

17.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문화예술과 예술진흥계
☎ 454-3283

사업 목적	취약계층 등 문화 누림 기회 확대로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사업 대상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서비스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시내버스, 택시 제외), 여행사, 숙박, 테마파크 등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개인당 카드 1매 발급, 연 15만 원 지급 -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원 추가 지원(해당연령 대상자는 총 16만원) - 청소년기 : 2008년생~2013년생(13세~18세) - 준고령기 : 1962년생~1966년생(60세~64세)
서비스 제공기관	-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자동재충전, 온라인(www.munri.kr), ARS(1544-3412) - 발급기간 : 2026. 2. 2. ~ 11. 30. -자동재충전기간 : 2026. 1. 16. ~ 1. 21.(4일간)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6. 12. 31. - 예산범위 내 신청자 발급(군산시 20,426명/ 추가혜택가능인원 3,239명)

스포츠 강좌 이용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8.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 454-3296

사 업 목 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여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사 업 대 상 (선정기준)	㉞ 지원연령 : 만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㉞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대상은 신청인(지원대상자)과 수급자가 다를 수 있음 (신청자 정보 1회 입력으로 가구단위 수급자격 조회 가능)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㉞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 급 자 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지역별 배정인원에 따름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㉞ 중복지원 제한			
- 공단‘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서 비 스 내 용	㉞ 1인당 매월 105천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㉞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이상			
※‘1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㉞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05천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㉞ 지원기간 : 12개월 지원			
㉞ 본인부담금 : 수강대상 강좌 총 금액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서 비 스 제공기관	㉞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접속 후 홈페이지 하단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검색 가능			
신 청 기 간	㉞ 매년 11월 중 접수(2주 ~ 4주차)		
㉞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동 직접 방문 서면신청			

19.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계
☎ 454-3296

사 업 목 적	▪ 저소득층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 ▪ 장애인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여												
사 업 대 상 (선정기준)	☞ 지원연령 : 만5~69세 장애인 ※출생일 기준 ☞ 수급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선정순위 <table border="1"> <thead> <tr> <th>선정순위</th><th>조 건</th></tr> </thead> <tbody> <tr> <td>1순위</td><td>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td></tr> <tr> <td>2순위</td><td>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td></tr> <tr> <td>3순위</td><td>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td></tr> <tr> <td>4순위</td><td>5~18세 비 저소득층</td></tr> <tr> <td>5순위</td><td>19세 이상 비 저소득층</td></tr> </tbody> </table> ☞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舊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복지부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65세이상 노인대상 건강상태 점검, 운동프로그램 구성 등 신체활동 지원 - 복지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장애인 대상 건강상태 점검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신체활동 지원	선정순위	조 건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선정순위	조 건												
1순위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2순위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3순위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4순위	5~18세 비 저소득층												
5순위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서 비 스 내 용	☞ 1인당 매월 110천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12개월 이상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110천원 이내, 월별 1회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기간 : 12개월 지원 ☞ 본인부담금 : 수강대상 강좌 총 금액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서 비 스 제 공 기 관	☞ 관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dvoucher.kspo.or.kr/) 접속 후 홈페이지 하단 시설 및 강좌조회에서 검색 가능												
신 청 기 간	☞ 매년 11월 중 접수(2주 ~ 4주차)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동 직접 방문 서면신청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20.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계
☎ 454-3244

사업 목적	■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 보장																		
사업 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발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9 ~ 24세 - 지원기간: 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지원 ('26년 기준 2001.1.1.~2017.12.31.)																		
서비스내용	㉾ 생리용품 구입비용 월 14,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 가능한 품목 -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국민행복 카드를 통해 월 14,000원 전자 바우처 지급(최대 168,000원) - 바우처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연간지원금 연 1회 생성(168,000원), 1년 주기로 소멸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부담																		
서비스 제공기관	㉾ [결제 가능한 유통점]																		
	<table><tr><th>카드사</th><th>온라인 유통점</th><th>오프라인 유통점</th></tr><tr><td>BC카드</td><td>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td><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td></tr><tr><td>삼성카드</td><td>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td><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td></tr><tr><td>롯데카드</td><td>롯데카드 뽐샵, 엘포인트몰, 베팡몰</td><td>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td></tr><tr><td>신한카드</td><td>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td><td>GS25편의점, CU편의점</td></tr><tr><td>KB국민카드</td><td>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td><td>GS25편의점, CU편의점</td></tr></table>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뽐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카드사	온라인 유통점	오프라인 유통점																
	BC카드	지마켓, 옥션,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쿠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노브랜드,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롯데카드	롯데카드 뽐샵, 엘포인트몰, 베팡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CU편의점, GS25편의점, 롯데마트, VIC마켓, GS더프레시, 세븐일레븐편의점																
	신한카드	신한카드 올댓쇼핑,국민행복몰	GS25편의점, CU편의점																
KB국민카드	KBPAY쇼핑, 국민행복몰, 쿠팡	GS25편의점, CU편의점																	
신청 기간	㉾ 2026년 1월 ~ 12월 * 기존 수혜 대상자는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바우처 자동 생성																		

첫만남이용권사업

21. 첫만남이용권사업(FEG001)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 454-3254

사 업 목 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 업 대 상 (선정기준)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출생 신고 전 사망 아동 포함(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하여 지급)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 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서 비 스 내 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 라 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2년* *2024.1.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1회)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서 비 스 제 공 기 관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신 청 기 간	㉢ 아동출생일 ~ 2년(사용종료일) 이전 *국민행복카드 발급시간을 고려하여 최소 2개월 전 신청 권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003001)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454-5858

사업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 대상 (선정기준)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 예외지원대상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미적용 : 희귀·중증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사·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24)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 서비스 종류 : 산모식사, 수유관리, 좌욕, 체조, 아기목욕, 세탁물 관리 등 ㉡ 제공기간 및 제공시간 <table><tr><th rowspan="2">태아유형</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서비스기간</th><th rowspan="2">제공시간</th></tr><tr><th>단축</th><th>표준</th><th>연장</th></tr><tr><td rowspan="3">단태아</td><td>첫째아</td><td>5일</td><td>10일</td><td>15일</td><td rowspan="9">1일 9시간 제공(5일/주)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제공기관과 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하고 계약서에 반영</td></tr><tr><td>둘째아</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셋째아 이상</td><td>10일</td><td>15일</td><td>20일</td></tr><tr><td rowspan="2">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단태아</td><td>인력 1명</td><td rowspan="2">10일</td><td rowspan="2">15일</td><td rowspan="2">20일</td></tr><tr><td>인력 2명</td></tr><tr><td rowspan="2">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쌍태아</td><td>인력 2명</td><td rowspan="2">15일</td><td rowspan="2">25일</td><td rowspan="2">40일</td></tr><tr><td>인력 3명</td></tr><tr><td rowspan="2">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삼태아 이상</td><td>인력 2명</td><td rowspan="2">15일</td><td rowspan="2">25일</td><td rowspan="2">40일</td></tr><tr><td>인력 4명</td></tr></table>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기간			제공시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1일 9시간 제공(5일/주)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제공기관과 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하고 계약서에 반영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태아유형	구분			서비스기간				제공시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1일 9시간 제공(5일/주) -휴게시간 1시간 보장 ※제공기관과 계약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하고 계약서에 반영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단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삼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쌍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table><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3">서비스기간 (일)</th><th colspan="2">단축</th><th colspan="2">표준</th><th colspan="2">연장</th></tr><tr><th>태아유형</th><th>출산 순위</th><th>소득유형</th><th>단 축</th><th>표 준</th><th>연 장</th><th>본 인</th><th>정 부</th><th>본 인</th><th>정 부</th><th>본 인</th><th>정 부</th></tr><tr><td rowspan="9">단태아</td><td rowspan="3">첫 째 아</td><td>A-가①형</td><td rowspan="3">5</td><td rowspan="3">10</td><td rowspan="3">15</td><td>73,000</td><td>659,000</td><td>299,000</td><td>1,165,000</td><td>671,000</td><td>1,525,000</td></tr><tr><td>A-통합①형</td><td>163,000</td><td>569,000</td><td>462,000</td><td>1,002,000</td><td>893,000</td><td>1,303,000</td></tr><tr><td>A-라①형</td><td>276,000</td><td>456,000</td><td>700,000</td><td>764,000</td><td>1,161,000</td><td>1,035,000</td></tr><tr><td rowspan="3">둘 째 아</td><td>A-가②형</td><td rowspan="3">10</td><td rowspan="3">15</td><td rowspan="3">20</td><td>119,000</td><td>1,345,000</td><td>402,000</td><td>1,794,000</td><td>834,000</td><td>2,094,000</td></tr><tr><td>A-통합②형</td><td>299,000</td><td>1,165,000</td><td>671,000</td><td>1,525,000</td><td>1,161,000</td><td>1,767,000</td></tr><tr><td>A-라②형</td><td>521,000</td><td>943,000</td><td>1,003,000</td><td>1,193,000</td><td>1,488,000</td><td>1,440,000</td></tr><tr><td rowspan="3">셋 째 아 이 상</td><td>A-가③형</td><td rowspan="3">10</td><td rowspan="3">15</td><td rowspan="3">20</td><td>90,000</td><td>1,374,000</td><td>358,000</td><td>1,838,000</td><td>774,000</td><td>2,154,000</td></tr><tr><td>A-통합③형</td><td>269,000</td><td>1,195,000</td><td>648,000</td><td>1,548,000</td><td>1,131,000</td><td>1,797,000</td></tr><tr><td>A-라③형</td><td>491,000</td><td>973,000</td><td>960,000</td><td>1,236,000</td><td>1,429,000</td><td>1,499,000</td></tr></table>	구분			서비스기간 (일)			단축		표준		연장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단 축	표 준	연 장	본 인	정 부	본 인	정 부	본 인	정 부	단태아	첫 째 아	A-가①형	5	10	15	73,000	659,000	299,000	1,165,000	671,000	1,525,000	A-통합①형	163,000	569,000	462,000	1,002,000	893,000	1,303,000	A-라①형	276,000	456,000	700,000	764,000	1,161,000	1,035,000	둘 째 아	A-가②형	10	15	20	119,000	1,345,000	402,000	1,794,000	834,000	2,094,000	A-통합②형	299,000	1,165,000	671,000	1,525,000	1,161,000	1,767,000	A-라②형	521,000	943,000	1,003,000	1,193,000	1,488,000	1,440,000	셋 째 아 이 상	A-가③형	10	15	20	90,000	1,374,000	358,000	1,838,000	774,000	2,154,000	A-통합③형	269,000	1,195,000	648,000	1,548,000	1,131,000	1,797,000	A-라③형	491,000	973,000	960,000	1,236,000	1,429,000	1,499,000
구분			서비스기간 (일)			단축		표준		연장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단 축	표 준	연 장	본 인	정 부	본 인	정 부	본 인	정 부																																																																																										
단태아	첫 째 아	A-가①형	5	10	15	73,000	659,000	299,000	1,165,000	671,000	1,525,000																																																																																										
		A-통합①형				163,000	569,000	462,000	1,002,000	893,000	1,303,000																																																																																										
		A-라①형				276,000	456,000	700,000	764,000	1,161,000	1,035,000																																																																																										
	둘 째 아	A-가②형	10	15	20	119,000	1,345,000	402,000	1,794,000	834,000	2,094,000																																																																																										
		A-통합②형				299,000	1,165,000	671,000	1,525,000	1,161,000	1,767,000																																																																																										
		A-라②형				521,000	943,000	1,003,000	1,193,000	1,488,000	1,440,000																																																																																										
	셋 째 아 이 상	A-가③형	10	15	20	90,000	1,374,000	358,000	1,838,000	774,000	2,154,000																																																																																										
		A-통합③형				269,000	1,195,000	648,000	1,548,000	1,131,000	1,797,000																																																																																										
		A-라③형				491,000	973,000	960,000	1,236,000	1,429,000	1,499,000																																																																																										

구분			서비스기간 (일)			단축		표준		연장	
쌍 태아 (중증+ 단태)	인력 1명	B-가-①형	10	15	20	74,000	1,758,000	391,000	2,357,000	893,000	2,771,000
		B-통합①형				260,000	1,572,000	698,000	2,050,000	1,228,000	2,436,000
		B-라-①형				558,000	1,274,000	1,143,000	1,605,000	1,712,000	1,952,000
	인력 2명	B-가-②형	10	15	20	234,000	2,614,000	794,000	3,478,000	1,407,000	4,289,000
		B-통합②형				479,000	2,369,000	1,107,000	3,165,000	1,781,000	3,915,000
		B-라-②형				844,000	2,004,000	1,574,000	2,698,000	2,343,000	3,353,000
삼 태아 (중증+ 쌍태)	인력 2명	C-가-①형	15	25	40	113,000	5,431,000	937,000	8,303,000	2,696,000	12,088,000
		C-통합①형				561,000	4,983,000	1,872,000	7,368,000	3,745,000	11,039,000
		C-라-①형				1,291,000	4,253,000	2,903,000	6,337,000	5,244,000	9,540,000
	인력 3명	C-가-②형	15	25	40	130,000	6,278,000	1,084,000	9,596,000	3,120,000	13,968,000
		C-통합②형				649,000	5,759,000	2,166,000	8,514,000	4,333,000	12,755,000
		C-라-②형				1,494,000	4,914,000	3,359,000	7,321,000	6,068,000	11,020,000
사 태아 이 상 (중증+ 삼태+ 이상)	인력 2명	D-가-①형	15	25	40	122,000	5,854,000	1,008,000	8,952,000	2,901,000	13,035,000
		D-통합①형				604,000	5,372,000	2,014,000	7,946,000	4,030,000	11,906,000
		D-라-①형				1,390,000	4,586,000	3,124,000	6,836,000	5,643,000	10,293,000
	인력 4명	D-가-②형	15	25	40	175,000	8,369,000	1,451,000	12,789,000	4,180,000	18,604,000
		D-통합②형				870,000	7,674,000	2,902,000	11,338,000	5,806,000	16,978,000
		D-라-②형				2,002,000	6,542,000	4,500,000	9,740,000	8,129,000	14,655,000

서 비 스 제 공 기 관	㉠ 전북 서비스 제공기관175,000 친정맘, 온유맘케어, 조은맘, 닥터맘, 전주 도우누리, 산모피아, 에스엠천사, 해피케어, 참사랑 어머니회. 휴맘스케어, 엔젤스맘, 가정방문 황손케어, 가족사랑복지센터, 전북산후관리센터,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신 청 기 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3. 기저귀 · 조제분유지원사업(GHA001)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
☎ 454-5858

사 업 목 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 업 대 상 (선정기준)	㉠ (기저귀) · 첫째아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둘째아 이상 : 첫째아 기준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 비 스 내 용	㉠ 지원내용 : 기저귀(월90천원/월), 조제분유(월110천원/월) ㉡ 지원기간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지원방법 :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할 시,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영아 부모), 대리인 위임장·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조제분유 신청 시) 의사진단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신청일에 따른 기저귀 지원금액 <table border="1"> <thead> <tr> <th>신 청 일</th><th>총 지원금액(천원)</th></tr> </thead> <tbody> <tr> <td>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 째 날</td><td>90천원×24개월=2,160</td></tr> <tr> <td>출생일 기준 61일 째 날~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td><td>90천원×22개월=1,980</td></tr> <tr> <td>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td><td>90천원×21개월=1,890</td></tr> <tr> <td>⋮</td><td>⋮</td></tr> <tr> <td>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td><td>90천원×1개월=90</td></tr> </tbody> </table>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할 시, 24개월 모두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후에 신청할 시 24개월 되기 전 남은 개월 수 지원	신 청 일	총 지원금액(천원)	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 째 날	90천원×24개월=2,160	출생일 기준 61일 째 날~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2개월=1,98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1개월=1,890	⋮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개월=90
신 청 일	총 지원금액(천원)												
출생일~출생일 기준 60일 째 날	90천원×24개월=2,160												
출생일 기준 61일 째 날~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2개월=1,980												
출생일 기준 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21개월=1,890												
⋮	⋮												
출생일 기준 23개월 째 날~출생일 기준 24개월 째 날의 전날	90천원×1개월=90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2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건강관리과 정신건강계
☎ 454-5054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사업 대상 (선정기준)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대상</th><th>증빙서류</th></tr> </thead> <tbody> <tr> <td>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td><td>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첨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td></tr> <tr> <td>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td><td>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td></tr> <tr> <td>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td><td>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td></tr> <tr> <td>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td><td>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td></tr> </tbody> </table> ㉡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사업대상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첨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사업대상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첨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등록기준 – 시설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참고 ([별표1]에서 건축물 용도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서비스 제공공간으로 볼 수 없는 용도(예: 주거, 숙박)의 건축물은 등록 곤란) ※ 임차·대여 시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인력배치기준: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 및 시설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상근이어야 하며, 다른 제공기관의 장 또는 다른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으로 겸직할 수 없음 ※ 제공인력은 상근이 아니어도 무방함 ㉢ 인력자격기준 1. 제공기관 장 자격기준 – 정신과 의사, 1급 또는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2. 제공기관 장 자격기준 • 1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④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나)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 '<u>24년~25년</u>'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①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② (국가전문자격)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③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④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⑤ (민간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 '<u>24년~25년</u>'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검사,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 등 이용자에게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 –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이며,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 불가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함 ㉢ 서비스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복지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정부보조금+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총 8회 제공)

- (본인 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유형 구분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본인부담금 결정>

① (가)유형 자부담 0% ② (나)유형 자부담 10% ③ (다)유형 자부담 30% ④ (라)유형 자부담 5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단위: 원)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가)유형	80,000	-	80,000	70,000	-	70,000
(나)유형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다)유형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라)유형	40,000	40,000	80,000	35,000	35,000	70,000

㉡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까지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
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월/회 단위) 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는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본인부담금은 기준정보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게 납부받을 수 없음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 납부 시, [서식 제24호]에 따라 본인부담금 영수증 관리 필요

카드발급 및
기타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필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필요

㉡ 카드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카드 5사

㉢ 신청방법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3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4호)’
를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제출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
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
류 필요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 (만 19세 이상)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5
호) 제출,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배송 및 사용등록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자
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배송

	*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월 8회)하며,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고,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필요(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재발급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재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서식 제3호) 제출(필요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4호) 제출 필요)
서 비 스 제 공 기 관	㉢ (10개소) 개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군산부부가족상담연구소,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보람가족상담센터, 선한HIM심리상담교육센터, 아름드리심리상담센터, 연세마음상담코칭센터(주), 최혜란 심리상담센터, 마음따숨상담센터('26.1.1기준) ※ 전국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기관 이용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신 청 기 간	㉢ 연중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25.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먹거리정책과 먹거리정책계
☎454-3013

사업 목적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망 확충 및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과 취약계층 먹거리보장 정책 확대																						
사업 대상 (선정기준)	㉢ <u>소득기준과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u>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원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인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20. 1. 1. 이후 출생자(만6세 이하) 2. [아 동] 주민등록기준 2008. 1. 1. ~ 2019. 12. 31. 출생자(만7세~만18세) 3. [청 년] 주민등록기준 1992. 1. 1. ~ 2007. 12. 31. 출생자(만19세~만34세) 4.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생계급여 수급가구 가구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보장시설 수급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전자바우처)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2월 (12개월) ㉢ 지원품목 :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버섯, 산나물 등) ㉢ 사 용 처 [오프라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편의점(이마트24, 세븐일레븐, CU, GS25) [온 라 인] 농협몰, 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지원금액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table><tr><th>가구원 수</th><th>1인</th><th>2인</th><th>3인</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h>9인</th><th>10인 이상</th></tr><tr><td>월 지원금액</td><td>40</td><td>65</td><td>83</td><td>100</td><td>116</td><td>131</td><td>145</td><td>159</td><td>173</td><td>187</td></tr></table> ※ 매월 1일에 자동 충전되어 당월 말일 까지 사용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월 지원금의 10% 미만인 경우 이월 가능 ※ 카드잔액은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조회 가능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월 지원금액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이상													
월 지원금액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서비스 제공기관	㉢ 농식품바우처 카드 사용처 - [로컬푸드] 군산로컬푸드직매장(박물관점), 군산로컬푸드복합센터(철길마을점), 군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동군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옥산로컬푸드직매장 ※ 자세한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가능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 단, '25년 수급자 중 자격유지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 ㉢ 신청방법 - [A R S] 고객센터(1551-0857) 신청 - [온라인] 농식품바우처 플랫폼(https://www.foodvoucher.go.kr) - [방 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단 외국인 가구원과 임신부 등 자격검증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방문 증빙 필요																						

[부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6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가사간병 방문지원,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2026. 1월 기준)

연번	사업명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가사간병 방문 (4개소)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중앙로 169, 농협3층(중앙로1가)	463-4191
2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신영1길 20-3(평화동)	442-0377
3		나눔노인케어센터	진포2길 18(수송동)	070-7804-2727
4		복받는실버요양센터	조촌안1길 22, 401호(조촌동)	070-8699-9138
1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3개소)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 19, 202호(나운동, G빌딩)	464-9592
2		소리엘언어심리센터	나운로4 306호(문화동, 현대코아 3층)	465-9799
3		군산심리발달교육원	번영로 72, 301호(경장동)	445-5413
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2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468-8396
2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월명로 215, 403호(수송동, 씨티월드)	466-6454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4개소)	(유) 좋은이웃	공단대로 454, 2층(나운동)	070-7753-7979
2		사회적협동조합 자운	성산면 환동길 13, 1층	465-8161
3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칠성로 186	465-6539
4		행복나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미장안길 60, 5동 203호(미장동, 통큰타운)	910-7555
1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4개소)	(유) 좋은이웃	공단대로 454, 2층(나운동)	465-1876
2		움직임놀이터	나운로 4, 303호(문화동, 현대코아)	442-0575
3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	칠성로 186	465-6539
4		사회적협동조합 소리엘	나운로 4, 3층(문화동, 현대코아)	465-9799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 그룹형 (1개소)	(유) 좋은이웃	공단대로 454, 3층(나운동)	465-1876

2026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2026. 1월 기준)

연번	사업명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23개소)	군산언어심리센터	공단대로 441, 2층(나운동, 상우빌딩)	464-7120
2		군산언어발달연구소	수송로 163, 3층(수송동, 예봉프라자)	465-5997
3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월명로 215, 403호(수송동, 씨티월드)	466-6454
4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 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468-8396
5		에디슨아동발달센터	신평안길 54-3, 101호(지곡동, 씨니빌)	464-9910
6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수송동로 105, 702동 101호(수송동, 제일@)	452-3642
7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학로 245, 202호(나운동, 라파빌딩)	465-9999
8		이화아동발달조기교육원	청소년회관로 47-7(송풍동)	471-6040
9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수송로257, 3층(미장동, 금강빌딩)	910-7555
10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7, 4층(수송동, 성우빌딩)	466-8322
11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공단대로 292, 3층(수송동, 백토빌딩)	465-7808
12		소리엘언어심리센터	나운로 4, 306호(문화동, 현대코아 3층)	465-9799
13		재미아이발달운동센터	신지길 29(지곡동)	910-1304
14		움직임 놀이터	나운로 4, 303호(문화동, 현대코아)	442-0575
15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 1길 19, 202호(나운동, G빌딩)	454-9592
16		브레인톡	하신 1길 19-3(나운동)	910-9003
17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 396, 3층(나운동, 고려빌딩)	242-4192
18		군산사랑나무운동발달센터	나운안 1길 19, 201호(나운동, G빌딩)	468-0942
19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나운로 13, 2층(나운동)	465-1774
20		사회적협동조합 공감발달연구소	계산로 91, 3층(지곡동)	910-3330
21		노아심리발달센터	궁포안 2길 24, 5층(조촌동)	442-1013
22		더(THE)꿈자람교실	신평안길 37, 1층(지곡동)	○1○-2825-4554
23		동그라미발달심리센터	진포로 87, 서준빌딩 3층(미장동)	○1○-2345-1809

2026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026. 1월 기준)

연번	사업명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장형) (22개소)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468-8396
2		그린맘심리발달연구소	월명로215 4층403호(수송동, 시티월드)	466-6454
3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 7, 4층(수송동, 성우빌딩)	466-8322
4		이선자인지언어치료연구소	수송동로105, 702동101호(수송동, 제일@)	452-3642
5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학로245, 202호(나운동, 라파빌딩)	465-9999
6		아리울언어심리연구소	공단대로292, 3층(수송동, 백토빌딩)	465-7808
7		군산미술심리아트앤하모니	계산2길 87-35, 1층(지곡동)	467-4894
8		군산언어발달연구소	수송로 163, 3층(수송동, 예봉프라자)	465-5997
9		군산언어심리센터	공단대로441, 6층(나운동, 상우빌딩)	464-7120
10		움직임 놀이터	나운로4, 303호(문화동, 현대코아)	442-0575
11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 19, 202호 (나운동 G빌딩)	464-9592
12		소리엘언어심리센터	나운로4, 306호(문화동, 현대코아)	465-9799
13		아티스군산	수송로204, 4층(수송동, 전진빌딩)	466-3900
14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나운 5길 46, 2층 (나운동)	070-8833-6235
15		브레인톡	하신1길 19-3(나운동)	910-9003
16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396, 3층(나운동, 고려빌딩)	242-4192
17		맑은소리아동발달센터	수송로257, 3층(미장동, 금강빌딩)	910-7555
18		문희예술심리상담소	대학로 305, 2층(나운동)	467-3938
19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	대학로558, 210호(군산대 두드림센터)	469-4629
20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지원센터	수송안1길 15-4, 1층 10호(수송동)	468-3075
21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층 401호(나운동)	911-7199
22		노아심리발달센터	궁포안2길 24, 501(조촌동)	442-1013

연번	사업명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23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5개소)	창의개발협동조합	대명길 14-12(대명동)	445-1412
24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나운 5길 46, 2층 (나운동)	070-8833-6235
25		아이전복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 7, 4층(수송동, 성우빌딩)	466-8322
26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468-8396
27		노아심리발달센터	궁포안2길 24, 501(조촌동)	442-1013
28	아동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8개소)	센트럴심포니 오케스트라	월명로 410(미원동)	461-7075
29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19, 202호 (나운동 G빌딩)	464-9592
30		문희예술심리상담소	대학로305, 2층(나운동)	467-3938
31		사운드오브뮤직센터	수송로 204, 4층(수송동, 전진빌딩)	461-3113
32		동아음악&놀이센터	산북로 58(산북동)	912-9127
33		늘봄마음채움상담센터	계산로87-6 제3층 302호	462-9991
34		비올른심포니	수송로279, 3층 302호	466-8445
35		그린아트독서클럽디오션센터	궁포안2길 27, 401호(조촌동)	442-9979
36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3개소)	100세건강(A형:수중)	황룡로 57(미룡동)	468-5016
38		루시아댄스아카데미	군산시 신지길7, 2층	010-9446-6676
39		유순정에어로빅(B형:마루)	서흥2길 57, 3층(서흥남동)	465-1410
40	장애인보조기 렌탈(1개소)	희망숲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686, 303-1호	070-4122-9233
41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6개소)	통증잡는백경안마원	월명로 233, 2층 (수송동, 효원월드)	468-1444
42		제일경락안마원	대학로 342, 811(나운동, 동아26빌딩)	466-9980
43		행복안마지압원	팔마로 77(서흥남동)	465-9788
44		건강회생안마원	나운로4, 2층(문화동, 현대코아)	443-1331
45		장진지압안마원	미장14길 35, 301호(미장동)	454-8151
46		건강안마원	하나운안1길 8-3, 1층(나운동)	471-8575

연번	사업명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47	정신건강 토달케어 서비스 (9개소)	규란복지재단	둔배미길 6-2(미원동)	442-4594
48		피터팬음악놀이치료센터	나운안1길 19, 202호 (나운동 G빌딩)	464-9592
49		청춘스케치	대야면 대야관통로 57	452-7598
50		더마음복지센터	나운안3길 10-5, 2층 201호 (나운동)	442-0486
51		협동조합 늘배움터	대학로 164(나운동)	446-5632
52		청심복지센터	하나운안2길 6-1, 2층(나운동)	466-2685
53		군산마음심리상담센터	백릉로 49-1,2층(경암동, 2층)	910-4335
54		마음따숨상담센터	문화로 36, 201호 (나운동)	○1○-4737-1646
55		지역을품는사회적협동조합	해망로 86, 1층(중동)	445-1902
56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8개소)	이룸	수송로 86, 1동 203호(나운동)	452-2679
57		아티스군산	수송로 204, 4층(수송동, 전진빌딩)	466-3900
58		지역을품는사회적협동조합	해망로 86, 1층(중동)	445-1902
59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군산지부	대학로 600, 전북사회경제혁신타운 413호	732-9261
60		필레오심리상담센터	신지길 12(지곡동)	466-1325
61		꿈누리	수송1길 19, 서경빌딩 202호	467-5546
62		블로코	월명로247,3층 302호(수송동)	○1○-3347-9261
63		그린아트독서클럽디오션센터	군산시 공포안2길 27, 401호(조촌동)	442-9979
64	스포츠활동 건강관리 (3개소)	아이드림운동발달연구소	나운로 13, 2층(나운동)	465-1774
65		사람과사람들	상나운로 12, 2층, 3층(나운동)	471-3854
66		드림허브 군산에프엑스	동개정길 20(개정동)	461-7400
67	노인문화 여가토달 서비스 (7개소)	협동조합 늘배움터	대학로 164(문화동)	446-5632
68		소통하는 복지센터	신촌2길10, 103호(조촌동)	451-4572
69		한국진로코칭센터	번영로 197(조촌동)	451-7907
70		(사)한누리	중정1길 3, 2층(중앙로1가)	443-1005
71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01호(나운동)	911-7199
72		100세건강	황룡로 57(미룡동)	468-5016
73		유순정에어로빅	서흥2길 57, 3층(서흥남동)	465-1410

연번	사업명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74	노인맞춤형 주거관리 (2개소)	마을활력소이음협동조합	나포면 나포초교길3(나포면)	452-5034
75		소통하는 복지센터	신촌2길 10, 103호(조촌동)	451-4572
76	청소년재활 승마지원 (1개소)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칠성로 59(산북동)	461-6555
77	글로벌 마인드 형성서비스 (5개소)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칠성로 59(산북동)	461-6555
78		(사)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원	대학로 600, 전북사회경제혁신타운 413호	732-9261
79		글로벌마인드형성센터	하나운로 18, 206호(나운동, 한울@상가)	○1○-8280-2633
80		꿈누리	수송1길 19, 202호(수송동, 서경빌딩)	467-5546
81		블로코	월명로247,3층 302호(수송동)	○1○-3347-9261
82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11개소)	본 심리상담센터	축동안3길 24, 201호(수송동)	465-2592
83		군산예술심리치료연구소	수송남로 20, 5층(수송동, 뉴그린빌딩)	468-8396
84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지원센터	수송안1길 15-4, 103호(수송동)	468-3075
85		맘투맘심리상담센터	나운5길 46, 2층(나운동)	070-8833-6235
86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층 401호(나운동)	911-7199
87		군산모래놀이심리상담센터(협)	대학로 558, 210호(군산대 두드림센터)	469-4629
88		아이전북심리상담발달연구소	축동1길 7, 4층(수송동, 성우빌딩)	466-8322
89		초록숲인지언어심리상담센터	대학로 245, 202호(나운동, 라파빌딩)	465-9999
90		우리봄심리상담센터	공단대로 396, 3층B(나운동, 고려빌딩)	242-4192
91		아름드리심리상담센터	번영로 72(경장동)	446-5413
92		필레오심리상담센터	신지길 12(지곡동)	466-1325
93	모두의힐링 농장서비스 (2개소)	간치말농장	서상면 간치말 1길 27	453-7759
94		주식회사 만나	옥구읍 오곡길 29-18	464-7897

2026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

(2026. 1월 기준)

연번	사업명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일상돌봄서비스사업 10개소	재가돌봄가사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중앙로 169, 농협 3층(중앙로 1가)	463-4191
2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신영 1길 20-3(평화동)	063-442-0377
3			나눔노인케어센터	진포 2길 18(수송동)	070-7804-2727
4		병원동행	군산한마음사회서비스센터	중앙로 169, 농협 3층(중앙로 1가)	463-4191
5			군산재가사회서비스센터	신영 1길 20-3(평화동)	063-442-0377
6			나눔노인케어센터	진포 2길 18(수송동)	070-7804-2727
7		영양관리	올담식자재협동조합	산북로 128	442-0700
8		심리지원	군산마음봄날심리상담센터	나운로 61, 4층 401호(나운동)	911-7199
9			본 심리상담센터	축동안3길 24, 201호(수송동)	465-2592
10		중장년건강생활	유순정에어로빅	서흥2길 57, 3층(서흥남동)	465-1410
11			협동조합 늘 배움터	대학로 164 (문화동)	446-5632
12		힐링지원	간치말맛집(간치말식생활체험관)	성산면 간치말 1길 27	453-7759
13			주식회사 만나	옥구읍 오곡길 29-18	464-7897
1	긴급돌봄지원사업 (3개소)		황토나라의료기복지센터	군산시 의료원로 64, 2층	063-453-0024
2			함께하는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군산시 두란뚝2길 3, 205호	063-453-0885
3			예사랑노인복지센터	군산시 하신재길 35	063-464-9907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